

한 상황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힘을 직접 노동자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노동자가 직접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참여하는 권한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위원회 조항을 활용함으로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 직업병의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상, 재활의 길을 열어주는 문제에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 현재 산업재해환자들은 노동부가 지정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기업주들이 사업장 인근 병, 의원과 진료계약을 맺어 그곳에서의 진료를 강권하여 환자의 진료권이 제약되고 있으며 그나마 불성실한 진료 등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자 수가 한해 2만 500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재활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산업재해보상액 또한 너무 적어 이들은 당장의 생계조차 막막하다. 따라서 산업재해 – 직업병 피해자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보상이 현실화되고 재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시급한 것이다.

나. 산업재해 – 직업병을 줄이기 위한 주체적 노력

우리 나라 산업재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문제를 국가나 기업에만 내맡겨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간의 경험을 통해 익히 알 수 있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산업안전보건법마저 지켜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건강권을 자기 힘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원세기나 신광기업 같은 곳에서는 주체적으로 작업환경측정에 관여하고 작업조건을 개선하고 직업병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예들은 많다. 나우정밀도 그러한 예의 하나이며 올해 수은중독이 밝혀진 오리엔트전자나 이황화탄소중독증을 추가로 밝혀낸 원진레이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작업환경에 관심을 갖고 산업재해 – 직업병 문제에 동료노동자와 우호적인 의료기관과 함께 대처해 왔다. 사실 이제까지 산업재해 – 직업병 관련 실태들은 거의 모두가 노동자나 양심적 의료기관, 단체들에 의해 조사되고 밝혀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우리 노동자는 노동자의 건강은 노동자가 지킨다는 기치 아래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함께 투쟁하며 산업안전 관련영역에 노동자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쟁취하여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개요

지난 80년, 3김 씨를 포함한 8백25명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를 비롯, 8천여명에 달하는 공직자 숙청, 당시 54명이 목숨을 잃고, 4백65명이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은 삼청교육대 사건,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해직,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학원·종교에 대한 사찰과 강제연행 등의 주역으로 활동을 하면서 5공화국 창출에 결정적 공헌(?)을 한 국군보안사령부….

또한 6공에 들어와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부장 테러사건, 국민대생 김정환 씨 생매장 협박 끌어치강요 사건 등을 일으켜 국민을 경악시켰던 국군보안사가 또다시 국민들을 엄청난 충격과 분노속에 몰아 넣고 있다.

지난 10월 4일 윤석양 이병(24, 한국외국어대 노어과 4년 제적)은 양심선언을 통하여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실상’을 폭로하였다.

87년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후보는 “모든 정보기관이 고유업무만을 전담토록 하고, 군의 정치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12·12 여의도 선거유세)라고 공약했고, '88년 5월 28일 4자 영수회담에서는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공작정치행위 등은 일체 중지시키겠다. 현재 조정 중이고 영원히 끝장내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88년 10월 5일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전국방부장관 오자복 씨는 “보안사가 대민관계 업무를 지양하고 군을 대상으로 한 업무 위주의 활동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기능만 하도록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각종 자료에 따르면 보안사는 6공이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대민사찰과 동향파악 업무를 계속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대통령의 공약과 국방부장관의 보고는 허위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민간인 사찰에 있어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가 갖고 있는 민간인 사찰자료를 합치면 정보기관의 사찰에서 자유로운 국민은 대통령을 제외하고 몇명이나 될지?

정보사찰기관의 인권침해에서 인권회복이 필요한 시기이다.

보안사, 과연 어떤 곳인가?

미군정과 함께 시작된 보안사의 역사는 1945년 미군정청에 의해 설치된 국방사령부내의 정보과로 부터 시작한다. 그 이후, 48년 국군정보국으로 개편되었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정보국은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독립하여 특무대라는 명칭으로 변경, 권한이 강화되어 나갔다.

제2공화국에 들어 특무대는 각군 방첩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권한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5·16 쿠데타로 대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은 집권말기에 정보업무와 공작정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3군으로 흩어져 있던 보안부대의 기능을 통합, 보다 강력한 체제로 운영할 의도로 77년에 대통령령 제8704호 육군부대령으로 보안사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일하면서, ‘12·12 사태’를 일으키고, ‘5·17 계엄확대조치’를 취할 때 보안사는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깊이 개입,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보안사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81년 민정당 창당시 한 간부의 회고에 의하면 “1월 6일 검은 짚차를 타고 보안사의 이상재·김두종 씨 그리고 중앙정보부의 윤석순 씨가 당사에 나타났다. 이들은 각

기 조직국장, 조사국장, 그리고 사무차장으로 당직을 맡아 일을 하였다. 민정당이 이들에게 접수당한 느낌이었다.” (신동아 88, 12)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보안사의 조직과 기능

보안사의 설치는 국군조직법 제 15조 1항의 ‘각군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제15조 2항에 따라 대통령령인 국군보안부대령이 정해져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안기부나 검찰과는 달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2조 ‘구성’에 의하면 ‘보안부대는 보안사령부와 각군 보안부대, 부대지원 보안부대, 통신보안부대 및 보안학교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보안사는 사령부와 각 단위부대의 보안부대 및 각 지역의 지구보안부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령부는 사령관 밑에 참모장과 6처 4실이 있다. (작년 정기국회 때 “6처 5실을 5처 4실로 줄이고 인원도 전체의 14%인 860명으로 감원하겠다”고 국방부가 기구축소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6처는 보안처·정보처·대공처·기획조정처·인사처·군수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비서실과 사령관 특별지시에 의해 이념문제 등 정책내용을 연구하는 연구실, 자체감사를 담당하는 감찰실, 자료를 수집·관리하는 자료처리실 등 4개실이 있다.

보안처는 군 내부의 정보수집 및 동향감시, 유무선 보안업무와 대통령경호 업무까지 맡고 있는 핵심부서이다. 또한 이곳에서 만든 자료가 장교인사를 좌우해 군내부에 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군사에 관한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의 업무는 윤이병의 폭로로 드러 났듯이, 사회의 각 분야를 대상으로 군사관련정보와 정치성 사찰을 하는 데 까지 이르고 있다. 정보처는 정치과·언론과·학원과·노동과·경제과·종교과 등으로 나눠져 있다.

대공처는 대공정보 수집과 간첩수사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첩조사 사건과 고문사건 및 프락치공작 등의 실무부서로 악명을 떨쳐 왔다. 이는 대공과·수사과·공작과·심사과·서방고분실·장지동분실·연구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안사는 이와 함께 기획조정처 및 인사처, 통신과와 군수과로 이루어진 군수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단위 보안부대는 각 군 보안부대(국방부·육군본부)→군사령부→군단→사단→연대→대대에 까지 거미줄처럼 조직이 펼쳐 있다. 지구보안부대는 14개 시·도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군지역까지 나가 있다.

보안사의 임무와 ‘존안카드’

‘대통령 직할부대’인 보안부대 요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군 보안업무 및 정보수집·동향감시 등 군내부를 감시하는 것이다. 안기부가 보안감사권을 통해 일반 행정관청 위에 군림하듯이, 국방부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가진 보안사 역시 이를 통해 일선부대를 통제한다.

통신보안과 비밀문서의 취급 등 실제 보안업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사관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문제를 끄집어 내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고, 따라서 ‘목덜미’를 잡는 것 역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보안감사가 목적이외의 용도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전직 고위장교는 “보안사의 보안감사가 비밀을 잘 관리했느냐를 점검하는게 아니라 비밀의 내용이 자기들 ‘사정권’내에 있느냐를 감시하는데 쓰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월간 말지 11월호)

‘존안카드’는 장교들에 대한 승진심사 때 그 위력을 발휘하는데 ‘존안카드’라 불리는 보안부대의 자료가 첨부돼 승진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진급과 보직에 일반 인사기록카드 보다 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 카드는 장교 개인의 평소 언행과 행동, 사생활까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보안대의 내사결과 뿐만 아니라 민원사항까지 기재가 요구되는 시기별 동향보고, 그리고 개인신상진술서 등을 이용하여 군내의 친분관계를 비롯하여 누가 상관이었고 누가 부하였나까지 보고된다고 한다. 따라서 군내부에서 ‘존안카드’를 관리하는 보안사의 보안처장은 ‘공포의대상’이며, 보안사 내부에서는 ‘보안사의 꽃’으로 손꼽힌다. 심지어 정부의 주요 인사이동이 있을 때면 보안사 요원들이 정부기관장이나, 고위공직자, 국영기업체 등을 접촉 또는 감시하여 작성한 자료가 중요한 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존안카드’의 위력은 군 외부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보안사의 역사, 조직과 기능, 임무 등을 간략히 살펴보았을 때 보안사

가 갖는 권한과 군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3공화국에서 6공화국에 이르기 까지 군출신이 최고통수권자로 군림해 온 우리의 현대사를 볼 때도 군의 존재는 실로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하물며 그 군을 통제·감시, 심지어 인사권까지 좌우하는 보안사의 힘은 대단히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5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초법적인 '국보위'를 만들고, 민정당의 산파역으로 5공화국 출범 때는 보안사의 핵심참모들이 청와대와 민정당의 요직에 그대로 옮겨 앉아 '보안사공화국'이란 신종어까지 나오게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게다가 역대 보안사령관 8명 중 최평우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장으로 승진·예편하였고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을 배출시킨 곳 또한 보안사이다.

이렇게 볼 때 보안사령부는 단순한 군부대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최고의 핵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권력기관이며 대통령의에는 그 누구도 명령할 수 없는 기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보안사령관은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수시로 '독대'하여 군사에 관한 사항은 물론 일반사항에까지 제한없이 보고하고 의견을 나누는 특수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이 이임사에서 "보안사는 국방장관이 장악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의미심장한 말로 생각된다.

보안사와 인권침해 사례

각계인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윤석양 이병이 제시한 증거물에 의하면 보안사의 사찰 대상자는 정계 136명, 종교계 182명, 학생 198명, 노동계 190명, 농민 61명, 교수 39명, 언론인 28명, 등 1,300여 명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사찰 대상자 중 개인번호 295번 노무현 의원의 경우, '개인특성란'에 "장기간 노동·인권변호사 활동, 국회진출 후 노동자권익 빙자 각종 노사분규 개입 등 활동"으로 적혀 있으며 '순화대상 A급'으로 분류돼 있다. 또한 주요 동향란에는 87년 8월부터 90년 5월 8일에 이르기까지 집회참석, 발언내용, 참가자수 집회규모 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 가장 최근인 90년 5월 29일 작성된 '분석의견란'에서는 "현대중공업 진상조사를 위해 2차에 걸쳐 부산에 내려간 바 있고 야당통합차 지

역조직력 강화에 박차를 경주하고 있음"으로 돼 있다. 또한 "결정적인 범증수집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 사찰임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주요인물 동향파악은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도 "주요인사들에 대한 보호목적이었다"고 발뺌한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프락치공작과 테러 사례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소재 경일광업소에 근무하던 전두환 씨는 1987년 3월 21일 사북천주교회에서 보안대의 사주에 의하여 노동운동을 하는 동료 광부들의 동태를 감시, 밀고하는 등의 프락치활동을 고백하고 양심선언을 하였다.

- 국군 제100보안부대 소속 김윤수 중사 등 7명은 성남지역 해고노동자 2명을 감시·미행하다가, 1987년 7월 8일 자신들의 미행이 탄로나자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각 목으로 머리를 때리고 벽돌로 온몸을 찍어 각각 전치 11일과 14일의 부상을 입힘.

- 충북 민주화운동협의회 회원 장현동 씨는 1987년 8월 18일 새벽 5시 30분경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괴청년 6명에게 눈을 가리운 채, 강제로 공군 제3579부대(보안대 또는 현병대)에 끌려가 자백을 강요 당하면서 집단구타를 당하였다.

민간인 불법연행, 가혹행위

'호헌철폐·독재타도'의 함성이 전국을 뒤덮고 있던 86년 5월 6일, 서울노동운동연합 소속 노동자 서혜경(당시 27세) 씨 집에 보안사요원 10여명이 들이닥쳐 서울 노동운동연합 간부이며 노동운동가들인 김문수, 노정래, 손세환, 최한배, 유시주 씨 등 6명을 영장없이 강제연행 했다. 서혜경 씨 등은 곧바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보안사 분실(이른바 '송파보안대')로 끌려가 물고문, 전기고문 등 온갖 가혹행위와 구타 등을 당하며 조사를 받은 뒤 13일 새벽에야 동대문구 장안동의 시경분실로 넘겨졌다.

프락치활동 강요

1989년 8월 28일 국민대생 김정환 씨는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인권위 사무실에서 ‘자신은 8월 9일 정체모를 20~30대 남자 6~7명에 의해 차량으로 납치돼 학원 프락치가 될 것을 강요받고, 알려 준 전화번호로 김건우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4번에 걸쳐 학내동향을 보고 했다’고 양심선언을 하였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괴한들이 수갑을 채우고 눈을 가린 채 알 수 없는 산으로 끌고 가 소나무에 묶은 뒤 수배증인 국민대 전 교지 편집장 김정덕, 김황영의 거처를 대라며 협박하고 구덩이에 김 씨를 넣고 삽으로 훕을 떠 부으며 생매장 위협을 하였다고 밝혔다.

김정환 씨 사건 외에도 1989년 9월 8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4학년 김정애 양이 교내집회에서 폭로한 바에 의하면, 김양은 8월 30일 안기부로 연행돼 이를 동안 갖 가지 협박과 인격적 모욕을 당하였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보기관들의 프락치 강요를 통한 인권침해사례는 그외에도 무수히 많이 폭로되었다.

보안사 부산 분실에서의 의문사

- 고 임기윤 목사(당시 59세)의 사례 -

“목사님께서는 1980년 7월 19일 국군보안사령부 부산 분실에 참고인으로 불려가신 뒤 3일 만인 21일 통합병원으로 옮겨졌다가 26일 돌아가셨습니다. 보안사 안에서의 3일 동안 어떠한 일이 목사님에게 있었는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안사측에서는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고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혈압이 80~150으로 체구에 비해 볼 때 그렇게 높은 편이었다고 할 수 없으며, 혈압으로 인한 이상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모님이 목격하신 바에 의하면 뒷머리 왼쪽이 3센치 가량 찢겨져 있고 그곳에 피가 흘러 말라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통칭 삼일공사라고 불리우는 보안사에 연행되었던 사람들은, 그곳 지하실에서 20대 청년들에 의해 폭행이 흔히 행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상으로 미루어 볼 때 고 임기윤 목사는 보안사내에서의 폭행·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돌아가셨거나 설혹 육체적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고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공

포분위기에서의 정신적 고문으로 돌아가셨으리라 추정됩니다.”

이상의 사례들 외에도 보안사는 지난 2월의 제4땅굴발견 보도와 관련하여 세계일보 편집국 간부를 연행하였고, 군복무 중 가혹수사를 한 전직 보안사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협박전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리고 윤석양 이병의 증언에 의해 ‘과학세대’ 와해공작과 ‘모비딕’이라는 경양식집을 직접 운영하며 정보수집 활동을 한 점, 계간지 ‘현실총점’을 발간하는 등 군과는 전혀 무관한 공작이 민간인을 향하여 전개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은 없어야 한다.

군 정보기관인 보안사의 대민사찰과 동향파악 업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 우선, 보안사가 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 사실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활동은 ‘공공연한 비밀’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이었지만,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이같은 불법행위가 명백히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보안부대령에 나와 있는 “군 보안 및 군 방첩에 관한 사항”, 군법 제44조 2호(내란·이적죄 등)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과 군 및 군과 관련있는 침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는 설치법령의 정신에 맞게 보안사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

● 그리고 이번 민간인 정치사찰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자료는 사찰대상자 1,300여명의 색인표와 이중 450명의 정치사찰 내용을 담은 컴퓨터 디스크을 포함하고 있다. 윤이병이 폭로한 자료는 사찰대상 전반에 관한 것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보안사에 의해 행해진 민간인 사찰활동 전반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러한 자료가 작성된 경위 및 활용목적, 최종보고자료 등을 진실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 이후 정부는 국방부장관과 보안사령관의 경질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느사건에서 보여줬던 정부의

태도와는 달리 기민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장관 한 두 명의 경질로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인권침해 활동을 해온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보안사 사찰과 관련해 군 검찰부에 구속돼 수사를 받았던 보안사 서빙고분실 책임자인 김용성 중령(방첩2과장)이 군 검찰부의 기소유예로 석방된 것이다(11월 26일자 동아일보). 11월 22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신임 이종구 국방장관은 “김중령은 보안사 서빙고분실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자료보관을 잘못해 윤석양 이병이 사찰 자료를 가지고 탈영했는데도 이 사실을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직후까지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구속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중령이 기소유예로 석방된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그간의 근무공적을 고려했다”고만 말했다고 한다.

● 이번 대민사찰과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철저하고 안전하게 마련하는 일이 요구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민들은 국방부장관과 보안사령관을 경질시키는 것 만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사태수습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민간인 사찰은 보안사의 오랜 관행으로, 보안사의 기능 및 기구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이 없이는 고쳐질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안사의 기구와 기능을 둘러싸고 ‘축소론’ ‘환원론’ ‘해체론’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해체론’은 꼭 필요한 보안·대공의 기능을 현병쪽으로 이관시키고 보안사를 완전히 없애버리자는 주장이고, ‘환원론’은 ’77년 국군보안사로의 통합 이전처럼 3군 방첩대로 분리·독립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축소론’은 대민사찰 등을 봉쇄할 수 있도록 보안사 기구를 줄이자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축소론’쪽으로 보안사의 구조와 기능을 정립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보안사 및 정보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과 국방부장관의 국정 감사에서의 발언이 모두 허위로 밝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축소론’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 보안사령관의 대통령 ‘독대’와 ‘감사’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관행이 되어있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보고 체계를 군부쿠데타 가능성에 대한 보고정도로 제한해야 하며, 지금처럼 보안사령관이 국방부장관 보다 대통령을 더 자주 만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 정보수집과 수사도 민간인에 대해서는 경찰 등에 의뢰하도록 해야 하며 수사과정의 가혹행위와 미행·감시 등의 대민사찰은 근절되어야 한다.

이 밖에 보안사는 자체감사 외에는 어떤 외부감사도 받지 않아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 이상 보안, 직무, 회계상의 감사를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아야만 한다. 특히 직속상급기관인 국방부가 보안사를 지휘·감독할 수단과 조직이 전무한 형편이라고 할 때 이의 시정은 시급한 일인 것이다. 또한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는 인권의 보장, 사회민주화와 가장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이의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한다.

경찰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개요

6공화국은 출범하면서 그동안 실추된 경찰의 명예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지난 88년 2월 25일 그의 대통령 취임사에서 “앞으로는 더 이상 강압적·권위적 경찰수사가 없을 것이며 경찰의 위상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든다. 5공 정권을 불명예스럽게 퇴진토록 한 경찰폭력이 6공들어 마찬가지로 되풀이되었고 날로 경찰권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구멍 뚫린 민생치안에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국민의 원성은 그칠 줄 모르고 높아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6공들어 ‘경찰범죄’라는 신종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경찰의 비리와 불법행동이 늘어가고 있어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층 강화된 시국치안

1990년 들어 경찰의 역할 가운데 시국치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그에 따라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이 자주 빛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2일, 민정·민주·공화 3당이 합당을 선언한 날 성균관대학교 수원 캠퍼스에서는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 창립대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이날부터 전국경찰은 치안본부의 특별지시로 세 정당의 사무실과 총재집에 대한 특별경비에 들어가 24시간 상주근무하는 한편 전노협 창립대회는 불법으로 간주, 대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였다.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주최측은 창립대회를 강행하였으나 최루탄을 발사하며 진입한 경찰에 밀려 선언문만 낭독한 채 대회를 서둘러 마쳐야 했다. 경찰은 교내에 진입하여 창립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학생 50여 명이 공부하던 도서관을 비롯 교내 곳곳을 수색, 학생들을 끌어내 학생증이 없거나 성대생이 아닌 학생들은 무릎을 꿇려 앉힌 채 집단폭행하기도 했다. 이날 노동자 연행 현장을 취재하던 〈조선일보〉 사진부 정양균 기자는 전경 4명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해 옆구리와 오른손 등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이날 하룻동안 대회참석자 140명을 포함 400여 명을 연행하고 그 가운데 두 명의 노동자를 구속하였다.

이렇게 90년 들어 3당합당 직후부터 정부에 반대하는 여러 세력들을 상대로 한 시국치안을 강화하여 집회, 시위, 결사, 사상, 표현 등의 기본적 권리들은 더욱 제한되어갔다.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학원으로의 경찰투입

경찰이 한동안 사회여론을 의식, 자제해왔던 학원으로의 경찰투입은 올해들어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지난해에는 부산교대에 시위진압 전경들이 들어가 학생들과 공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산교대생 이경현(여)씨가 경찰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뇌사상태에 빠지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가 하면 같은해 5월 부산 동의대에서는 경찰의 총기발사 사건에 항의하던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뒤, 불붙은 화염병이 신나에 불이 붙는 바람에 전경 5명이 그 자리에서 불에 타거나 질식

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학생들은 화염병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직도 법정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어찌되었건 학원으로 경찰병력을 무분별하게 투입한 결과, 학생·경찰 모두가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생겨왔던 것이다.

이같은 일은 올해들어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5월 20일 전남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 대회'에서는 경찰이 조선대 교내로 10차례 이상 다연발 최루탄을 발사하고 시위대를 향해 M-7 연막가스를 터뜨린 뒤 돌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또한 경찰은 직격 최루탄을 발사하고 시위자들을 연행하면서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가 하면 불발 화염병에 불을 붙여 시위대에 되던지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 과정에서 수원에 사는 노동자 조대관(29)씨가 경찰 쪽에서 날아온 돌에 얼굴을 맞아 안경이 깨지면서 안구가 파열됐고 학생 박철민(23·한양대 사회4)씨는 경찰이 쏜 SY-44 직격탄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험몰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그밖에 수백여 명의 노동자·학생과 경찰이 서로 피해를 입었다. 경찰의 과격한 시위진압이 있고 난 뒤 조선대 교수들은 교수협의회(의장·박복남·57) 명의로 성명을 내고 "경찰이 학교 안에까지 들어와 무자비하게 직격탄을 발사하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국민들을 자극, 경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다다랐다"며 성토하기도 했다.

경찰의 학원투입은 사람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5월 24일 서울 승실대학교에서는 노랑진 경찰서 소속 사복전경(일명 '백골단') 150여 명이 교내로 들어와 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과학관, 학생회관, 인문관 등 3개 건물 대형 유리창 80여 장과 공중전화 박스, 승용차 3대 등을 부수고 경비원 1명만이 있던 과학관 1층에까지 들어가 현관문과 대형거울, 패종시계를 부수기도 했다.

이같은 일은 한양대학교에서도 발생, 경찰은 총장 집무실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 기물을 부수고 교직원의 벽살을 잡고 욕설을 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예들은 몇몇 대표적 경우일 뿐이며 그밖에도 북한영화상영저지를 위한 경찰투입 등 학원으로의 경찰진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일어났다.

112 전화신고로 노사분규에 경찰개입

전화번호 112는 일반 범죄사건을 신고하는 전용번호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번호는 올해 들어 노사분규를 진압하는 데에도 새롭게 이용되기 시작했다.

1월 17일 정부당국은 '악성 노사분규에 대한 경찰력 투입대책'을 마련한 뒤 그 후 속조처로 경찰국 및 경찰서에 '노사대책 전담반'을 설치하는 한편 사업주의 112 신고가 있을 경우 즉각 경찰병력을 쟁의현장에 출동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투입기준'에 따르면 이른바 '악성 노사분규'에 대해 사업주의 112신고 접수와 동시에 수사형사를 쟁의현장에 출동시켜 채증활동에 들어가고 현행범인 경우 현장에서 즉시 검거·연행하며 비현행범일 경우라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토록 되어 있다. 이런 지침이 마련되자마자 서울 남부경찰서는 2월 1일 노조원들이 집단행동을 취한 (주)대한광학의 회사측 112신고를 접수받고 즉시 경찰 600여 명을 출동시켜 노조원 92명을 연행한 뒤 3명을 구속조치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측은 "회사 쪽으로부터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행범 연행과 노사분규 조기진압"이라는 차원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112신고출동 방침은 봄철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앞두고 만들어져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노사분규를 볼온시하여 조기진압한다는 당국의 인식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마치 일반범죄처럼 다루고 있다는 데서 커다란 시각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군 작전 방불케 하는 쟁의진압

올해들어 대규모 군 작전을 방불케 하는 경찰의 과격한 진압행위가 노사분규의 현장에서 발생하여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당국의 비타협적·편향적 모습을 드러냈다. 4월 25일부터 노사교섭을 앞두고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을 고소·구속한 데 대한 항의로 시작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은 회사측의 요청에 따라 경찰력이 투입된 뒤 커다란 사태로 발전하였다.

이때 경찰은 '현대 90'이라는 진압작전 이름을 짓고 병력투입 초기부터 화학차, 견인차, 포크레인, 고가 사다리차 등 50여 대의 특수차량을 동원키로 하고 육·해·공 입체작전의 도상훈련을 하기까지 했다. 경찰 1만여 명이 투입된 이 진압작전은 4월 28일 새벽 5시 헬기 3대를 회사 상공에 선회비행케 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서울 03-1925 폐이로더 차량이 다연발 최루탄 발사와 함께 진입하여 노동자들을 해산시켰고 헬기로 저공비행하면서 최루액을 뿌리기까지 했다. 경찰의 대규모 진압작전으로 회사

에서 밀려난 노동자 300여 명은 82미터 상공의 크레인에 올라가 장기농성함으로써 사태는 더욱 발전하기도 했다. 그후에도 경찰은 노사분규현장은 물론 각종 시위현장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초기에 진압하고 수많은 시민·경찰 쌍방에 피해를 초래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경찰병력 장기진주

경찰이 시위 등 집단행동이 발생한 현장에 시위진압을 명분으로 장기간 진주하여 마치 계엄령을 연상케 하는 일도 생겨나게 되었다. 4월 12일에는 KBS 서기원 사장의 요청으로 300여 명의 경찰을 KBS에 한 달 이상 상주케 한 사상 유례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경찰측은 “KBS가 국가보안 목표시설이기 때문에 방송사가 정상화 될 때까지 경찰력을 철수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의 KBS 직원들은 “백여 명이 넘는 KBS 자체 경비요원만으로도 충분히 보안목표 시설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이같은 장기진주가 다음 6월에 있은 임시국회에서의 방송법안 통과 시 KBS직원의 반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의도가 있음이 드러났다.

시국치안, 엉뚱한 피해 유발

시국치안의 과정에서 시위 등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엉뚱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 1월 27일에는 3당합당 직후 치안본부의 특별지시로 민주당 사무실을 경비하던 전경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민주당 울산시 남구 지구당(위원장 심완구·현 민자당 의원) 사무실의 외곽경비를 서던 경남도경 제5기동대 소속 전경 5명이 사무실 한 구석에서 숯불을 피우고 잠을 자다가 질식하여 3명이 숨진 것이다. 그런가 하면 경찰이 노동운동 관련으로 수배된 노동자를 붙잡는다며 엉뚱한 집을 수색, 이에 놀란 집주인이 실신하는 일도 있었다.

5월 25일 오후 9시경 마산시 완월동 오외주 씨 집에 창원 경찰서 수사과 형사 10여 명이 신발을 신은 채 갑자기 들이닥쳐 장롱 등을 뒤지며 10분간 수색했는데 안방에서 잠을 자던 오씨의 부인 유미자(36) 씨가 사복경찰을 강도로 오인, 놀라 실신하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처럼 경찰의 시국치안 과정에서 시민들이 당한 피해는 시위 발생 현장에 있다가 시위대로 오인되어 집단구타를 당하는 등 거의 시위가 발생할 때

마다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경찰 고위층, 시국치안 부추겨

일단 경찰이 민생치안에 소홀하면서도 시국치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과정에서 말썽을 빚는 것은 경찰 고위층의 부추김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5월 16일에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파업 때 경찰의 강제진압과 관련 경남도경 산하 일선 시·군 경찰서장과 도경과장, 전경부대장등 경감급 이상 고위간부 55명이 내무장관 표창을 받고 80명이 치안본부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편 지휘관급 이상 간부들이 내무장관·치안본부장 표창을 받자 일선 진압경찰이 이에 대해 형평에 어긋난 처사라며 반발하자 18일에는 비간부 480명에게 표창을 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화염병 시위가 발생했는데도 “구속자가 한 명도 없다”며 지휘책임자가 문책당하는 일도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90. 3.27 치안본부는 관내에 화염병 시위 발생에도 불구하고 구속자가 없는 61명의 경찰서장 상대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

지난 5월에는 전주 서광교회 경찰 난입사건, 광주 운전기사 폭행사건, 송실태 기물파괴사건 등 시국치안 과정에서 생긴 경찰의 과잉행동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 사회일각에서 치안본부의 무대책을 질타하자 고위관계자는 “연일 시위진압으로 시달리는 일선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대답한 것이 신문지상에 밝혀져 경찰 고위층에서 시국치안에서 빚어지는 무리에 대해서는 두둔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이처럼 시국치안에 좋은 실적(?)을 올리면 상을 받고 그렇지 못할 경우 문책을 당하는가 하면 과잉행동조차도 적당히 보호받기 때문에 일선 경찰은 관내의 민생치안 보다도 시위진압 등에 열중하고 상부의 눈초리를 의식, 검거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실제 4월 6일 부산 금정 경찰서는 시위대학생들에 대한 검거실적을 올리기 위해 시위가 끝난 뒤 귀기중이던 대학생 151명을 무차별 연행한 일이 있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부산대 대학원 이 아무개(28) 씨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내려가는 사람까지도 연행하고 부당한 검문·검색에 항의하면 마구잡이로 폭행했다”고 증언했으며 이에 대해 경찰서측에서는 “연행실적이 저조하면 상부로부터 문책을 받아, 무리인 줄 알면서

도 학생들을 연행했다”고 실토했었다.

사라지지 않는 최루탄

87년 6월 연세대 이한열 군이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게 되자 최루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이는 5공정권 퇴진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6공 들어서도 최루탄 남용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며 그 피해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5월 치안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5개월 동안 최루탄 18만 발을 사용, 작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총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최루탄 사용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5월 30일 치안본부가 작성한 ‘화학탄 확보 및 수급계획’을 보면 5월 20일 현재 5개월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17만 9427발의 각종 최루탄을 사용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사용한 16만 3861발보다 무려 1만 5500발이 더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통계가 공개됨에 따라 지난해 7월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경찰이 최루탄 사용수칙을 대폭 강화해 최루탄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필요한 최소의 양을 지휘관의 감독 아래 사용토록 공언한 것이 거짓 약속이었음이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최루탄 사용량이 급증하자 광주항쟁 10주년 기념행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5월 17일, 국방부로부터 다연발 최루탄 세트, KM-25 최루탄 10만 발, 최루탄 가스분말 4500kg을 긴급 차용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올들어 최루탄 사용이 급증하여 엄청난 국가예산상의 낭비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이 최근 발견되었다. 11월 22일 치안본부 보고를 보면 경찰이 올해 10개월 동안 시위진압용 최루탄 구입에 사용한 비용은 당초 금년 예산에 책정된 액수의 6배가 넘는 4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최루탄 비용은 하루 평균 1천4백47만원 꼴로 지난 80년대 하루 평균 9백6십3만원보다 50.3%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시위초동진압에 사용되는 다연발 최루탄 사용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백 35세트보다 배 가량 늘어나 시위에 대한 경찰의 초기 강경진압 양상을 보여줌과 동시에 최루탄으로 인한 피해의 증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경찰의 최루탄 사용이 급증한 것은 올들어 경찰이 “각종 시위를 국기수호의 차원에서 강력 진압한다”는 지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SY-44 최루탄을 비롯한 총류탄 발사 최루탄들이 45° 이하의 각도에서 직격발사되고 있음이 확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한열 군 사망 이후 최루탄 직격발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발된 45° 안전발사 장치가 기계적 결함을 갖고 있는 데다, 이같은 결함을 알아챈 사수들이 수평상태에서 발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직접 실험한 결과 총구를 지면과 평행상태로 유지하고서도 사수가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총기를 앞으로 내밀면서 방아쇠를 잡아당기면 격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최루탄 직격발사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어났다. 5월 20일 광주 조선대에서는 마산 노동자 공병욱(27) 씨가 SY-44 최루탄을 가슴에 맞아 최루탄 앞부분의 등근모양이 도장처럼 찍히는 피해를 입었으며, 동국대생 김진태 씨는 명동 새로나백화점 앞길에서 SY-44직격탄에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지고 왼쪽 눈을 실명했으며 오른쪽 눈도 각막이 찢어져 완전실명의 상태로 되었다.

11월 16일에도 서울 한양대 교문에서 시위를 벌이던 김현기(22·한양대 원자력공학과 3년) 씨가 최루탄에 맞아 실명당하는 등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한편 최루탄에 의한 부상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치료대책이 없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학생들의 경우 학교측이 지불보증을 서주거나 치료비를 약간 보조하기도 하며 학생회가 모금활동을 벌여 치료비를 충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시민이나 노동자의 경우 대책이 마련하기만 하다. 물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몇 해가 걸리기 때문에 큰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경찰, 총기도 무분별 사용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사용은 6공들어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다. 올해 들어서는 총기의 남용이 더욱 증가하였다. 1월 14일에는 성북구 길음동에서 벌어진 대학생들의 거리시위 현장에 M-16을 소지한 5분대기부대 전경 18명이 동원됐다. 5분대기부대는 지난 60년대 대간첩작전 수행을 목적으로 일선 각 경찰서에 배치됐으며, 출동 때는 M-16소총과 각 경찰서 상황실 통제하에 있는 실탄을 휴대하도록 되어 있다. 2월 28일 대구에서 열린 시민들의 시위행진 대열에 경찰이 38구경 권총을 발사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총기사용은 비단 시위현장뿐 아니라 단순사건에서도 남발되어 피해가 생기고 있다.

경찰범죄의 발생

경찰의 성폭행

지난해 말 치안본부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6곳들어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리로 적발된 경찰관들만 총경5명, 경정17명 등 경위급 간부 191명을 포함 모두 1808명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에는 요즘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부녀자 폭행사례도 있어 큰 충격이다. 올해 들어서도 충남 은천경찰서 소속 명현옥 경장이 지난해 5월 폭력사건으로 구속된 장아무개(32) 씨 사건을 조사하면서 장씨의 여동생(26·학원강사·경기도 안양시 매탄동)에게 “오빠를 잘 뵐주겠다”며 술을 먹인 뒤 여관으로 끌고가 강제추행하였다. 명경감은 또 정양이 결혼하려 하자 나체사진을 찍은 뒤 “결혼하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1월 3일에는 야간근무중 관용차를 몰고 근무지를 이탈한 의경 3명이 술을 먹고 소녀 3명을 유인해 집단 구타한 뒤 성폭행을 하려다 붙잡히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이들을 무직으로 처리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은 채 사건무마를 시도하려다 발각되기도 했다.

윤락 단속정보제공, 상납반기도

사창가의 포주들을 상대로 경찰이 윤락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상납을 받아온 사실도 있었다. 11월 19일 청량리 경찰서에 연행된 김태조(44·여·동대문구 전농2동) 씨는 “10년 전부터 청량리 일대 포주로 있으면서 월 1회씩 단속정보를 통보받는 조건으로 청량리 경찰서 보안과 직원들과 역전 파출소 직원에게 매주 1~2차례에 걸쳐 2만~5만 원씩을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액수가 적다고 불만을 표시 할 때는 10만 원을 더 주었으며 손님과 싸움이 벌어졌을 때는 무마비조로 1~2백만 원을, 명절때는 20~3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이 자신의 직분을 이용, 돈을 갈취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 공릉1파출소 한은석(41) 순경은 지난해 서울 은평구 갈현아파트에서 연신전철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운송허가권을 따 달라며 은평구청 도시정비과 운수1계 박모씨에게 1백만 원을 준 뒤 사업허가가 나오지 않자 “뇌물수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하여 지난해 말부터 모두 12차례에 걸쳐 3천 7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일도 있었다.

비위사실의 은폐

경찰은 직무태만이나 비위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자주 범하고 있다. 특히 90년 들어 잦은 강력범죄 사건으로 민생치안부재를 탓하는 사회여론이 일자 아예 사건발생 자체를 은폐하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

3월 14일에는 서울 노량진 경찰서 관내 여관에 7명의 폐강도가 들어 투숙객으로부터 5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자 출동당시 피해자들에게 “수사상 필요하니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다짐을 받는가 하면 강도발생 현장에 투숙객 중 근무자를 이탈한 전경2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사건발생 보고에서 이를 감추기도 했다.

11월 4일에는 경기도 일선경찰서들이 범죄사건부를 허위기재한 사실도 발견되었다. 광명경찰서의 경우 88, 89년 범죄사건부에서 검찰 미송치 사건수와 허위기재한 사건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폐는 오늘날 경찰 스스로도 민생치안 부재에 대해 시인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성전에 난입해 사제까지 폭행

올해 들어 경찰이 저지른 폭력사례들 가운데는 성당에 난입하거나 신부를 폭행한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5월 19일 광주에서는 경찰이 성당에 난입하여 신자들을 폭행하고 교구청에까지 들어가 수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날 주교좌 성당인 광주임동성당에서는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주관으로 광주항쟁 10주기 추모미사가 열렸다. 미사가 끝난 뒤 신자들은 성당 밖으로 나가던 중, 마침 금남로에서 추모제를 마치고 행진하던 시민들과 합류하기 위해 광주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신자들은 신자가 앞세우고 성가를 부른 뒤 광주항쟁 영령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침묵한 채 행진하였다. 행진대열이 광주역 근처에 이르자, 경찰은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신자들은 질서를 지키고 평화행진을 하겠다며 계속 나아갔다.

이때 경찰은 갑자기 최루탄을 쏘며 앞장서던 청년 학생들을 불잡기 위해 뒤로 물려 서던 신자들을 향해 쫓아갔다. 신자들과 경찰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신자들은 밀려나 해산하거나 임동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뒤쫓아온 경찰들은 학생들이 임동성당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성당 안으로 들어와 수위실 유리창을 깨는가 하면 “잡아라” “야 이 × × 야”하고 고함을 지르며 본당건물과 교구청까지 들어가 학생들을 불잡아갔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도경찰국에 공식항의하고 경찰난입을 규탄하는 모임을 가졌으며 지회책임자의 사과를 받고 ‘없었던 일’로 용서하였다.

8월에도 교회에 대한 경찰의 폭행사건이 두 번이나 일어났다. 8월 16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임진각에서 열린 ‘통일염원미사’가 끝나고 일부 신자들이 신부들의 북한방문이 정부에 의해 좌절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자유의 다리 철책 까지 가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미사시작 전부터 들어와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던 정·사복 전경들은 신자들이 들고 있던 만장을 빼앗아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서울교구 가톨릭 대학생연합회 소속 학생들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으며 전경의 폭행을 말리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최경욱 간사가 집단구타를 당해 온몸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졌다.

8월 16일에는 사제가 폭행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날 오후 4시경 김포경찰서 양곡지서 이강섭 순경(24)은 무단으로 양곡성당(인천교구·김포소재)마당으로 들어와, 이 성당 청년단체의 하계수련회 내용을 고등부 학생 2명에게 캐물어 받아쓰고 있었다. 이에 본당 사무장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정보수집행위를 하자 사무장의 보고를 받고 사제관을 나온 이 성당 제정원 신부는 이 순경의 무례한 행동에 주의를 주었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지 말라, 절차가 중요한 것 아니냐”는 신부의 말을 듣고 이 순경은 갑자기 “뭐 이 × × 봐라, 너 경찰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 이름은 이강섭이다. 왜 이 × × 야” 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순경으로부터 무례한 행위를 당한 제신부가 지서에 항의전화를 하기 위해 본당사무실로 가던 순간, 이 순경은 “야 × × 야, 니가 상관이냐. 왜 오라가라 하느냐?”며 따라와 발로 신부의 옆 구리를 걷어차고 왼쪽 뺨을 때렸다. 이에 제 신부가 “어디 계속 때려 봐라”고 하자 이 순경은 “이 × × 야 못칠 줄 아느냐”며 다시 손을 올려 폭행하려다 신자들의 제자로 더이상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 주위의 한 사람이 나서 “민주경찰이 이렇게 신부님을 때릴 수 있느냐” 하고 항의하자 “신부라는 × 이 오죽이나 못났으면

순경한테 얻어 맞느냐”하는 등 더욱 거칠게 욕설을 한 뒤 오토바이를 몰고 떠났다.

그후 이 사건 소식을 접한 인천교구 사제단은 19일 오후 사제비상총회를 갖고 항의 성명을 냈으며 20일에는 사건현장인 양곡본당에서 “인권과 교권회복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기도 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신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경찰은 이 순경을 파면조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개 지서 순경의 우발적 행동이었다거나 순경개인의 문제로만 다루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고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려는 가톨릭 교회와 신부들에 대한 공권력의 왜곡된 시각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천교구 사제단의 8·21성명은 사건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공권력이 갖고 있는 부도덕성과 폭력성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범죄와의 전쟁

노태우 대통령은 10월 13일 ‘새질서 새 생활 운동’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생치안과 관련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마침 보안사 민간인 사찰을 규탄하는 ‘국민대회’가 보라매공원에서 열리던 터에 있게 되어 여론을 무마하려는 조치로 의혹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전쟁선포에도 불구하고 민생치안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10월 29일의 치안본부 집계에 따르면 범죄와의 전쟁선포 뒤 보름간 전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는 모두 1만 5064건으로 하루 평균 1400건을 기록하였다. 이같은 범죄발생건수는 지난달에 비해 하루 평균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만 해도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11월 14일에는 살인사건으로 일가족을 잃은 최영규(36·제7안식일 예수재림 방배교회 담임목사) 씨의 일가족 4명에 대한 영결식이 열렸다. 영결식을 마친 뒤 조문객 500여 명과 함께 고인을 실은 영구차가 장지로 떠났는데 이 차량에는 “구멍뚫린 민생치안 국민은 누굴민나” “대통령은 신문을 보셨나요” 등 경찰의 민생치안 소홀을 질책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이는 범죄를 상대로 전쟁까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데 대한 국민의 원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11월 16일에는 86년부터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일기 시작한 부녀자 연쇄 폭행·살

인사건이 또 일어나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전쟁선포, 인권침해 소지도 발생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뒤 경찰은 민생치안확립 그 자체보다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후속조치들을 마련해 많은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경찰이 피의자를 임의동행할 때 동행거부권 및 경찰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음을 일러줄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동행후 3시간 이상 경찰서에서 머무르게 할 수 없다'는 조항도 24시간 불잡아둘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처럼 경찰이 범죄소탕을 명분으로 경찰관 직무 집행법을 마음대로 손질해 임의동행을 24시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강제연행을 법률적으로 허용, 형사소송의 대응책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외근 경찰관에게 총기와 실탄을 지급하도록 조치하여 선량한 시민을 다치게 하거나 가벼운 범법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소지를 안고 있다.

우려되는 경찰관 의식구조

경찰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데에는 경찰관의 왜곡된 의식구조가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2일 형사정책연구원이 조사한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경찰관의 의식구조'에 따르면 수사경찰관의 75%가 "흉악범은 법률상 권리를 다소 제한해도 좋다"고 응답했고, 62%가 "흉악범에게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가해도 좋다" 그리고 79%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주면 범죄문제는 해결 안될 수밖에 없다"고 답하였다. 흉악범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재판의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흉악범으로 단정해 과잉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가하면 이 조사에서는 수사 및 외근경찰관의 상당수가 초과근무·낮은보수·인사 불공정·사회적 따가운 눈총 등으로 제복근무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의 만족도는 승진 3%, 창의력 발휘 6%, 사회적 존경 2.3% 등에 불과해 전체 응답자의 73%가 경찰투신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같이 경찰관의 의식이 크게 빼뚤어져 있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

지 못한 것이 오늘날 경찰의 인권침해와 스스로의 비리 등 탈법행위를 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경찰의 위상재정립을 위하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올해들어 경찰의 권한은 여러 측면에서 한층 강화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권한의 강화에 맞게 주민에게 신뢰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의 정도가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경찰자신이 범하는 비리와 위법·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과연 경찰이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커다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오늘날 경찰의 문제는 단순히 일부경찰이 본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개선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경찰전체의 위상을 바로잡아야 할 정도로 그 구조와 행태 그리고 의식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다.

더욱이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안이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경찰문제가 개선되기보다는 문제가 커질 소지가 있다.

이 경찰법안에 따르면 형식적으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에 인사, 예산 등의 심의·의결권을 주고 있긴 하지만 이 위원회의 위원을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이 위원회 자체가 그 동안 국민으로부터 소망되어온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지킬 수 없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에는 다른 부서의 업무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직무관여금지조항'마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정치적인 영향과 잡무 속에서 '동네북'처럼 되어온 혼란을 개선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의 입장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 분명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의 건강한 질서를 바로잡는 경찰본연의 소중한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경찰의 의식구조를 바로잡는 한편,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하는 자율권과 근무조건개선 등이 필요하다.

1990년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경찰의 올바른 위상확립 문제는 인권신장이라는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 우리 모두의 절실하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교도소는 인권의 사각지대인가?

개요

인신구속의 기본의의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주거를 제한함으로써 원활한 재판진행을 가능케 하는데 있다. 또한 재판으로 인하여 선고된 형벌의 집행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존중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재소자들이 올바르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결코 침해받거나 유보되어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인권이다.

이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범법행위로 인한 사회로부터의 격리·구금이 일시적, 부분적 공민권의 제한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코 인권의 유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가장 비인간적인 행위가 일상적이고 공공연히 자행되는 곳으로 교도소를 예로 들수 있다.

1990년도 1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생한 교도소내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월 21일에 서울구치소의 기결수 감방에서 박봉수씨가 수감 하루만에 입과 항문에 피를 흘린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3월 2일에는 대전교도소 앞에서 단식중지를 호소하는 재소자 가족이 교도관과 경비교도대 1백여명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했다.

7월 26일에 마산교도소에서는 교도관의 재소자 폭행항의에 시국관련재소자 34명을 포승묶고 재갈물린 사건이 있었다.

8월 3일, 마산교도소 재소자 노경진 씨가 맹장수술 4일 뒤 숨졌다. 담당의사는 '후송지연·조기퇴원'이 결정적 사인이라고 밝혔다.

8월 4일에는 목포교도소에서 재소자에게 가혹행위, 이에 항의단식하자 눈·코를 막고 강제급식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도소 인권탄압의 배경

교도소내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난 7·8월의 서울구치소, 춘천교도소, 마산교도소, 청주교도소, 목포교도소 등에서 집중적으로 가해진 교도소내의 인권유린 및 인권탄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 교도소내의 재소자 처우문제는 6월항쟁 이전의 시기와 비교하여 많이 개선되어진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개선도 사회의 전반적 민주화 추세와 함께 '장흥교도소의 재소자 인권실태'와 같은 교도소내 재소자에 대한 인권유린 및 인권탄압에 대한 폭로 등에 힘입은 바 크다. 하지만 3당야합 이후 국가권력의 횡포는 교도소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고, 이는 교도소내의 재소자 처우 및 인권을 6월항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있다.

흔히 감옥은 그 사회의 진면목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사법권, 형벌권이란 군대의 무장력과 함께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인 바, 그 국가체제의 본질적 성격이 형벌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놓축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교도소 폭력은 먼저 그것을 행사하는 집단이 국가기관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공적인 권리’으로 존재해야 할 국가권력이 ‘폭력’으로 전화되어 인권유린을 일삼는다면 일개 개인이 맞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국가 기관이 법과 제도, 물리력을 동원하여 인간의 기본권리를 짓밟는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발전은 기대할 수도 없고, 오직 인간성의 파괴만을 보게 될 것이다.

일제시대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행형법과 행형제도들, 그리고 전근대적인 사고에 젖어 진정한 ‘교도·교화’의 현실적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교도간부들… 이 모두가 문제발생의 직접적 원인들이다.

일제시대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행형법과 행형제도

현재의 행형법은 명치 41년 3월 28일 제정된 일본의 감옥법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으며 5공화국 초창기인 1980년 12월 22일 일부 조문이 더욱 개악되었다. 또한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 3431호에 의해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을 제정하였다. 경비교도대에게는 감호소, 구치소, 교도소에 대한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비교도대가 외부의 공격에 대한 단순한 경비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형사시설 내부의 행형 등 업무전반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감옥이 법문 그대로의 교정시설이 아니라 치안시설의 하나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행형법은 지배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사시설의 관리·운영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재소자들의 법적인 지위보장 내지는 관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 형별권의 행사,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현대적인 처우, 재판이 확정될 때 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미결 구금자의 방어권 보장, 형사피의자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의 근거가 된 형사유치장 등의 감옥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재소자들의 불복청구권 등에 관하여는 초보적인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교도소측의 막강한 재량권과 전근대적 사고에 젖어 있는 교도간부들

교도소내의 인권침해를 야기시키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가 교도소측의 막강한 재량권과 전근대적 사고에 젖어있는 교도간부들이다.

이러한 교도소의 재량권과 교도간부들의 사고는 수감자의 모든 생활영역을 지배하고 있다. 또한 뚜렷한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통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교

도소내에서는 법의 지배의 원칙이 관철되지 아니하고 사람에 의한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도소측은 그 막강한 재량권을 이용하여 재소자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교도소측의 은혜로서 주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현행 행형법 체계 및 그에 기초한 관행 아래서 재소자는 일반사회와 격리되어 감옥이라는 울안에 갖힌 ‘국가의 노예’라 할 수 있다.

지난 1986년 장흥교도소에 수감됐던 9명의 양심수가 폭로한 ‘재소자 인권실태’는 교도소측의 막강한 재량권을 잘 묘사하고 있다.

“교도관들은 재소자에 대한 계호 역할을 명분으로 교도소측 재소자들이 사회로부터 격리·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가혹행위가 외부와 차단된 채 행하여 질 수 있다는 것을 방폐막으로 재소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유린함은 물론이거니와 재소자들의 그들에 대한 인격적 종속을 강요하며 각종 노예적 태도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교도관들의 재소자에 대한 일상적이고 무분별한 폭력과 폭언으로 나타나며, 그것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교도관들의 의식에 의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이곳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 의한 인권유린과 구타 등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교도관에게 이야기 할 때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 무조건 무릎을 꿇은채 이야기를 해야 하고, 만약 그렇게 비굴하리 만큼 순종적이지 않으면(마치 주인의 노예처럼) 느닷없이 육과 함께 구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른 교도행정의 무원칙성

지난 7월 7일 법무부는 전국 교도소, 구치소에 ‘공안사건 관련 재소자에 대한 특별 관리 지침’을 공문으로 내려 보냈다. 이러한 지침이 7·8월 교도소 인권침해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친척이나 운동권 인사, 전과 경력자 등과의 접견을 금지시키도록 지시했다. 또 교회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가족이외의 접견을 금지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우리는 정부가 교도행정을 개선해 서신, 독서, 집필, 신문구독, 텔레비전 시청, 접견 등의 제한이나 금지를 완화하려 애쓰고 있음을 높이 평가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공문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그나마 재소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는 현행 행형법에 규정된 '서신·접견' '사책 검열' 조차 정치적 목적 및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작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도소 인권침해 사례

사례 1: 목포교도소

가. 교도관들의 재소자에 대한 일상적인 폭언·폭행이 저질러지고 있다. 특히 미결수들에 대한 빈번한 욕설, 기합, 구타가 어떠한 저항도 없이 당연스럽게 자행되고 있다. 기합의 종류로는 원산폭격, 쪼그려뛰기 등이 주된 것이고, 특히 소년수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강요되고 있다. 또한 교도소 보안과 경비에만 배치되어야 할 경비교도대를 재소자와 자주 접촉하는 자리에 있게 만들어 이들에 의한 마구잡이 욕설과 구타가 가해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운동시간의 부족에서 비롯된 바구니공장 재소자들의 평화적인 입방거부 농성에 교도소당국은 성실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폭동'으로 매도, 경비교도대를 투입시켜 곤봉과 군화발로 폭력진압을 강행하여 10여명의 재소자가 크게 다친 일이 있다.

나. 몸이 불편한 재소자가 부득이한 사정을 호소하여 출역에서 빠질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정밀진단과 성실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소자의 호소를 꾀병으로 간주하고 징벌 방에 포승줄로 묶어 짚개는 한달, 길개는 두달 가량 생활하게 하는 체벌이 한때는 무슨 유행병처럼 자주 있었다. (목포교도소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보고서 중에서)

사례 2: 마산교도소

7월 25일 일반 재소자를 면회온 부인이 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면회를 금지당하고 면회를 요청한 재소자는 보안과 지하실에서 구타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국관련 재소자 34명이 교도관의 일반재소자 폭행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마산교

도소 교도관과 경비교도대원 1백여명이 이들을 집단 폭행하여 중경상을 입혔다. 이들은 교도관들로부터 두손, 두발에 채운 수갑끼리 한데 묶어 등이 활처럼 휘개 하는 이른바 '비녀꽂기'를 한 채 2시간 가량 구둣발과 주먹으로 얹어맞아 그중 몇몇은 호흡곤란과 구토를 일으키고 등뼈가 다치는 등 중경상을 입었다. 특히 전 마산상고 교사 안종복 씨(전교조 교사)는 구둣발에 가슴을 채여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먹은 것을 계속 토하는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비녀꽂기 때 허리를 다쳐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등뼈를 다쳤다. …(중략)… 또 지난 7월 31일 마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노경진 씨가 열흘전부터 복통을 호소했으나 교도소측은 이를 무시하고 진통제만 먹이고 방치하다가 뒤늦게 맹장수술을 받게 했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수술 4일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숨진 노씨는 교통사고 특가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 형행성적이 좋아 이번 8·15특사 때 가석방 될 예정이었다."(한겨레 신문 8월 4일자)

사례 3: 청주교도소

경비교도대원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는 폭언과 함께 임수경 씨의 어머니를 향해 총을 겨눈 사건.

8월 23일 청주교도소에 수감중인 김현장 씨(전민련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와 임수경 씨를 면회하기 위하여 임수경 씨의 어머니 김정은 씨와 언니 임윤경 씨, 그리고 홍근수 목사(임수경 후원사업회 회장), 범민족대회 북미주대표 2명은 임수경 후원사업회 간사 등 11명과 청주교도소에 도착, 접견을 신청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바라는 충북민연과 각 단체 그리고 학생 20여명이 함께 하였다. 그러나 교도소측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접견을 거부하였다. 이에 오후 3시경 접견신청자들은 교도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단의 경비교도대와 교도관들은 폭력과 폭언을 하며 면담요구를 묵살해 버렸다.

참가자들이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교도소측에서는 18시 30분경 사과를 하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가한 경교대 2명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이들은 강요에 의한 사과를 형식적으로 하는 듯 시종일관 매우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가족들이 반성의 빛을 요구하자 경교대 2명은 모자를 집어 던지며 사과를 못 하겠다며 교도소 쪽으로 올라가면서 근무자가 들고 있던 총을 빼앗아 "모두다 죽여버리겠다"는 폭언과 함께 임

수경 씨의 어머니를 향해 총을 겨누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참가자들은 교도소장의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며 교도소안 200m 까지 진출하여 농성을 벌였다. 20시 경 교도관들의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임수경 씨 어머니가 실신, 참가자 전원은 문밖으로 밀려나왔다.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20시 30분경 교도소측의 요청으로 출동한 전경들에 의해 북미주대표 2명과 충북민연 부의장 하재윤 목사 등 23명이 서부서로 연행되었다.

사례 4: 춘천교도소

법정에 재판받으러 나간 길에 동료의 안부를 물었다고 집단구타 당함.

8월 30일 10시경 부터 진행된 강원대생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7명에게 집행유예, 1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구속학생과 방청객은 구호와 계란 투척으로 항의하였다. 이에 교도관들이 급히 구속학생들을 교도소로 호송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입구에서 학생 60여명이 호송차를 가로막고 20여분간 대치 후 호송하였다.

조용일(28세, 성원희 기념사업회 전 사무국장)씨가 항소심 심리공판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 대기실에서 대기 중 창문틈으로 동료노동자들과 안부를 전하는 등 간단한 이야기를 하자 교도관들이 제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조용일 씨를 6명의 교도관들이 집단구타 하였다. 10시40분 경 법정에 출두한 조용일 씨는 오른쪽 눈부위가 시커멓게 명들고 눈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 정도로 부어 있었다. 재판은 연기되었고 교도관들에 의해 강제로 호송된 조용일 씨는 교도소에 도착한 이후 15명의 교도관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고 실신하였다.

사례 5: 서울구치소(8월 27일)

“도서차입 허가여부는 구치소의 재량사항이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구치소의 방침에 따라 차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담당자의 주장에 대한 정당한 항의가 재소자에 대한 무차별 폭력으로 이어졌다.

앞문과 뒷문을 제외한 전 통로를 막은 다음 앞문은 방패 등으로 무장한 경비교도대, 뒷문은 교도관들을 배치하였다. 그리고는 사전경고도 없이 갑자기 가스총을 분사하고 사파탄(10발이상)을 투척하며 진압을 하였다. …(증략)… 경교대원 등은 재소자들

을 불잡아 교무과 복도로 끌고 가면서 양옆에 수없이 늘어선 교도관과 경교대원에게 마음껏 폭행하도록 하였다. …(증략)… 교도관들은 재소자들을 무차별 구타하여 각 사동으로 몰아넣고 일부는 징벌방에 보냈다. 그리고 일부 교도관들이 돌아다니면서 각 사동의 재소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하였다.(소내의 혼란함을 이유로 다른 사동의 재소자들에게까지 기울을 잡으려 한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이유도 모른 채 교도관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다 항의하던 재소자 5~6명도 심하게 다쳤으며, 맨처음 구타가 시작되었던 7사동의 상동의 재소자들이 가장 많은 상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렇게 가혹행위를 당한 재소자들이 신음을 하며 발로 문을 차는 형식으로 항의를 하자, 같은 날 21시 경 부터 거의 모든 정치범들(대략 90명 정도)에게 시승시박을 하였다. 이때 이들이 실시한 시승시박이란 양손을 뒤로 돌려 꽉 끼일 정도로 수갑을 채우고 그 뒤에 다시 포승을 묶은 다음 이를 뒷발과 연결시켜 묶고 팽팽하게 당겨 놓는 것을 말한다. 교도관들은 묶은 자국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끼워 재소자들을 묶었으므로 재소자들은 고통 때문에 계속하여 고함을 질렀는데, 이때마다 교도관들이 들어와 사정없이 폭행을 가했으며, 척추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외없이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한다.(서울구치소 재소자 탄압사례〈민변보고서〉에서)

사례 6: 육군 31사단 영창

“제가 겪었던 고통의 나날들, 상상할 수 조차 없는 배고픔과 추위와 끔찍스런 가혹행위는 가히 지옥이라 일컬을 만 했습니다. 거의 매일 저는 지독한 추위와 배고픔과 비인간적인 대우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31사단 영창은 건물이 오래되어 매우 낡았으며 난방장치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아 하나 있는 온풍기를 작동하고 있어도 매우 추웠습니다. 작년 겨울 얼마나 추웠던지 저를 비롯한 수감자 다수가 동상에 시달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결핏하면 트집을 잡아 그 추운 날씨에 전체 수감자에게 옷을 벗고 통로로 집합하라고 하여 수감자들이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통로로 집합하면 온풍기를 끄고 창문을 열어 젖히고는 5명씩 앞의 시멘트 바닥으로 나오게 하고는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을 자동적으로 수십회 계속 반복하도록 하고, 추위와 극도의 공포심에 떨며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을 반복하고 있는 수감자들에게 하는 속도가 느리다면 찬물을 끼얹으

면서 수감자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보며 근무자들 끼리 웃고 즐기는 것 이었습니
다.”(박창식 씨의 글에서)

글을 엮으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행형의 역사는 감옥내에서의 밀행적, 폐쇄적인 처우가 수형자의 사회복귀 그 자체에도 유효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해 온 시행착오의 역사였다. 그리하여 현재의 경향은 1)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로의 이행이 추진되고 시설내 처우를 가능한 한 한정하여 사회내 처우로 바꾸고, 2) 시설내 처우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사회내 처우에 가깝도록 하여 수형자와 사회와의 접촉을 가능한 한 확대하고 시설 내 생활을 사회내 생활에 가깝도록 하며, 3) 사회적 현상인 범죄를 사회적으로 복구시키는 작업으로서 행형을 파악하고 범죄자의 가족을 포함한 사회관계의 개선, 회복을 제도화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소위 행형의 사회화이다.

한편 법무부는 위와 같은 행형의 사회화를 목표로 198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행형제도에 대한 극히 초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이러한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고 그 형식 자체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것이 아니고 법무부령이나 내규 정도로 보장되고 있어서 정치상황의 변화와 교도소측의 재량권 행사로 얼마든지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명백하다. 그러므로 법무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나타난 내용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여러사항에 대하여도 교도소 측의 자의로 재소자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는 행형법에 그 세부사항을 자세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형자를 포함한 모든 피수용자를 일반국민과 똑같이 헌법상의 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로 인식하고(자유의 추정), 그것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행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제한(비례의 원칙)이 법규에 의하여 근거가 주어지도록(법치주의) 입법개정작업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진정한 행형의 법률화이다.

행형의 법률화는 재판으로 인하여 선고된 형벌의 집행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도록 하여 재소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응력을 배양하도록 입법화 하는 것을 뜻하는 바, 이는 형사사법상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실현인 것이다.

이러한 전제위에서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유지되는 가

운데 교도소측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행형의 인도화, 과학화, 국제화, 사회화를 보장하여 국가가 적정한 형벌권을 행사하도록 담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형의 법률화이며 나아가 이는 민주적 행형을 달성하는 지름길이며 올바른 인권을 실현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장기구금양심수, 어떤 사람들인가?

개요

일본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된 우리 조국은 그 해방의 기쁨도 가시기 전에 미·소 양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한반도를 자기 세력권의 한 단위로 편입시킨, 양 강대국은 우리 민족 스스로가 우리 민족의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 을 차단했으며 냉전질서 유지를 위한 강대국 이데올로기를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각각 남과 북에 내재화 시켜 버렸다. 그 결과 우리가 삶의 터를 잡은 남한에서는 미국 이 대표하는 반공이데올로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 어떠한 주장도 철저히 탄압되어 왔으며, 나아가서는 반공을 명분으로 내세운 제멋대로의 독재와 비리가 판을 치는 반 공의 역사가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반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되어야 한다”는 물구나무선 가치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처참한 인권상황의 근원이며 오늘날 장기수 및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의 근원이다.

장기구금양심수는 7년 이상의 형기를 선고받은 양심수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151명의 장기구금 양심수가 있으며, ‘월북 기도’와 기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가 간첩죄의 적용을 받고 있는 데, 그것은 1988년 12월 21일의 양심수 대석방 조치에서 ‘간첩’과 ‘미전향자’가 석방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사상전향을 거부하는 58명의 소위 ‘미전향 좌익수’들은 대전교도소에 수감 되어 있으며, 93명의 전향자는 대구, 안동, 전주, 광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장기수문제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장기간의 가혹한 고문에 의해 조작된 혐의가 있는 많은 간첩사건의 진상규명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에 거의 그 유례가 없는 초장기 구금수들의 석방문제이다.

조작간첩문제

작년 12월 31일,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국회청문회는 그의 불성실한 증언 때문에 난장판으로 끝났지만 그에 대한 질문서에는 5공 때 발생한 많은 간첩조작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1971년에 납북되었다가 이듬해 귀환한 어부인 김성학씨는 14년이나 지난 1985년에 어느 날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무려 72일 동안이나 고문수사를 받고 기소되지만 참으로 기적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참혹한 고문으로 간첩이 조작되는 과정이 생생하게 묘사된 그의 수기는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다.(〈신동아〉 '88년 10월호)

최근에는 월북자 가족인 인천 창령감리교회 이창국 장로 간첩사건(15년형·안동교도소 재감)에 대하여 기독교 쪽에서 조작이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으며, 일본관련 사건인 천주교 신자 이장형(무기·대구교도소)간첩사건에 대해서도 천주교 쪽으로부터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띄는 이런 몇몇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간첩조작은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는 정도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민주화실천 장기수가족협의회에서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장기구금양심수 151명 중 남파공작원 50명과 월북기도사건 등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전면

적 혹은 부분적으로 고문에 의하여 조작된 간첩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1989년 11월 현재 복역중인 장기구금양심수 216명의 사건 연도별 및 유형별 통계(별표 참조)에 의하면 50년대, 60년대를 통해 북한은 상당한 '남파 공작원'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7·4 공동성명(72년) 무렵부터 거의 없어진다. '7·4' 이후의 남파공작원은 극히 예외적이라는 사실은 남한의 공안당국측에서도 상식으로 되어 있다.

70년대 이후 '남파'가 아닌 간첩 사건 즉 1)월북자 가족사건 2)월남자사건 3)남북어부사건 4)재일동포사건 5)일본관련사건 6)민주화운동 관련 해외유학생사건이 증가하는데 이런 사건들은 특히 5공 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93건). 70년대 이후의 많은 간첩사건의 '틀'이 확립되었으며, 70년대 이후의 소위 간첩사건들은 대체로 하찮은 행동을 이 '틀'에 얹지로 끼워 맞춘 흔적이 있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남파'가 아닌 이런 간첩사건들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첫째, 간첩행위를 증명할 만한 물적 증거가 전혀 없으며 유죄판결은 전적으로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둘째, 거의 모든 사건이 1~3개월간의 불법구금하에서 취조되었으며, 피의자들은 한결같이 처참한 고문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셋째, 간첩사건치고는 뜻밖으로 적은 7~10년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왜 간첩이 광범위하게 조작되어야 하는가? 충분한 이유가 있다.

첫째로, 우리 나라를 무겁게 짓눌러온 반공이데올로기이다. '반공'이라는 개념이 모두 가치의 왕으로서 여타의 진정한 가치(자유, 민주, 인간의 존엄 등)위에 군림하는 이 반공지상주의의 현실은 우리 사회에 가치의 전도현상을 광범위하게 만연시켰다. 그 결과 사람들은(특히 대공 수사요원들은) 민주주의나 자유가 억압되어도, 국민의 기본권이 짓밟혀도, 반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지극히 자연스럽게하게 되었다. 이 가치의 전도현상은 필연적으로 사법과정 전체를 병들게 한다. 1)정체 모를 밀실수사기관의 난립 2)납치와 불법감금의 관습화 3)제멋대로의 고문 4)검사의 대공수사기관에의 종속 5)간첩사건에 있어서 판사의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왜곡된 사법과정은 '간첩'을 대량생산하는 시스템에 다름이 아니다.

둘째로, 우리 나라의 독재정권은 정권안보를 위하여 언제나 보다 많은 간첩사건을

필요로 해왔다는 점에 있다. 선거·민주화운동의 고조기 등 묘하게도 중요한 정치적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신문지상을 요란스럽게 장식하는 간첩단사건 기사들이 바로 그 증거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은 궁지에 몰리면 으레 '북으로부터의 위협'을 내세워 국민의 입을 다물게 하고 정권의 부도덕을 합리화시킨다. '북으로부터의 위협'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간첩사건인 것이다.

셋째로, 위와 같은 조건에 힘입은 대공수사관들의 포상욕·승진욕이 큰몫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조작된 간첩들은 참혹한 고문과 계속되는 옥고로 갈기갈기 찢긴 채 차디찬 감방에서 신음하고 있다. 감옥에 고립된 이들에겐 지금 진상을 밝힐 길이 없다. 이들의 석방과 명예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초장기수 문제

이종환 씨는 가난한 7남매의 맏아들로 인천에서 태어나 지금 67세이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어 국민학교도 다니다 말고 막노동을 하게 되었으나 언제나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이기엔 부족했다.

먹을 것이 없어 보채는 어린 동생들을 보면서 그는 직장이 보장되고 가난과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세상이 와야 한다는 소박한 바램을 가지고 남로당에 가입했다고 한다. 6·25가 나자 황해도에 있던 남로당계 정치학교에 3개월 가량 있다가 고향인 인천으로 내려오던 중(51년) 38선에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듯이 바로 검거되어 눈을 가리운 채 호송되었다.

단심제 군사법정에서 국방경비법 33조(부역)로 15년형을 받았다가 6개월 후에 판결무효가 되었으나 일사부재리 원칙도 무시된 채 다시 재판을 받아 같은 법 32조(간첩)로 결국 무기징역을 받았다. 간첩혐의 내용은 38선에서 짚차에 실려오면서 눈 가리개 틈으로 군사 시설물을 보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는 '간첩'이기 때문에 4·19 직후의 일반사면에서 제외되고 오늘까지 40년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는 자그마한 체구에 곱상한 면모를 지녔다고 하며 배운 것은 없지만 언제나 단정하고 깔끔하다고 한다. 그가 사상전향을 거부하는 이유는 노동자가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실업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이종환 씨 말고도 지금 우리 나라에는 40년째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두 사람 더 있다(김우택, 김선명). 넬슨·만델라가 27년이나 옥살이를 했다가 세상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분개하기도 했지만 우리 나라에는 그 넬슨·만델라보다 더 많은 세월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25명 가량이 있다.

50~60년대에 북한에서 과연되어온 공작원들의 거의가 20년 이상 감옥살이를 해온 '초장기수'들이다. 즉 현재 151명이 장기구금 양심수 중 이들의 수는 50명이고 그 중 90퍼센트가 20~40년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이들은 거의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감형·가석방·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교도소 재소자로서 가장 열악한 처우를 감수해야 하는 등 온갖 불이익 속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의 과거 행위가 어떤 것이었건 이같은 초장기의 감옥생활을, 그것도 이런 노인들에게 더 이상 강요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일 수도, 조국통일을 조국통일을 위한 노력일 수도 없음이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다. 단지 인도주의적인 이유만으로도 이들은 석방되어야 할 것이다.

대개 '간첩'하면 "이북에서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내려온 무서운 이북사람"이라는 느낌을 일반국민들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숫자가 있다. 현재 감옥살이를 하는 50명의 남파공작원 중 34명이 남한출신, 12명이 북한출신, 4명은 미확인이라는 숫자가 그것이다. 이 숫자에서 우리는 '간첩'이 우리 조국 분단의 비극이요, 희생양임을 실감하게 된다. 거칠게, 지극히 도식화시켜서 말하면, 해방공간에서 좌익적 경향의 정치·사회·문화운동에 참가했던 그 엄청난 사람들은 이승만정권이 확립되어 가던 47·8년경 이후, 이 땅에 발을 못붙이게 되어 일부는 산으로 도피했고, 일부는 지하로 숨었고, 일부는 북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 빨치산이 되고, 남로당 지하조직 활동을 했고, 그리고 '간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빨치산 문제나 남로당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나 '간첩'문제를 바라보는 눈은 아직도 차디차다.

이들은 결코 스스로를 '간첩'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과거 행동을 조국통일에의 기여였다고 믿고 있다. 일제치하에서부터 혹은 해방직후부터 그들 나름의 믿음과 방식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기여하려고 꾀투성이가 되면서 결국은 '간첩'이라는 낙인이 찍혀 감옥에서 늘어가는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비참

한 자화상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겪어온 참담한 현대사의 아픔에 비추어 보건대 이들은 당연히 '간첩'이 아닌 '정치범'으로서 명예가 회복되어야 할 때에 와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간첩'개념은 분명 조국 분단으로 말미암은 개념이며 따라서 조작됐든 남파됐든, 간첩은 분단체제가 냉은 조국분단의 가장 두드러진 희생양이다. 이런 의미에서 장기구금양심수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일 그 자체가 분단상황의 극복 내지는 조국통일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간첩 개념의 공포에 짓눌려 현대사를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를 그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룩한 사업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복역중인 장기 구금양심수
216명의 사건 유형별 및 사건 연
도별 통계표

월 북 자 자 가 족 사 건	1 월 남	2 월 북	3 남 부	4 제 어	5 일 동	6 본 부	7 민 관	8 운 유	9 동 학	개 별 국 보 · 미 활 인	계
										조 직 기 사 도 건 원	
계	14	2	16	17	39	8	8	15	61	36	216
51										3	3
52										1	1
53										1	1
54											
55										3	3
56										1	1
57										3	3
58										3	3
59										5	5
60										1	1
61										5	5
62										3	3
63										2	2
64										1	1
65										1	1
66	1									3	4
67										1	

복역 연수별 장기구금 양심수

30년~40년	18
20년~29년	26
19년 이하	107

연령별 장기구금 양심수

70세이상	11
60세~69세	38
59세 이하	102

(1) 월북기족사건

6·25이전에 좌익활동을 하다가 6·25때 월북한 사람의 남한 거주가족들이 의심받고 간첩으로 몰림.

월 68	북 자 자 족 사 건	1 월 남 자 자 족 사 건	2 북 어 부 사 건	3 제 동 포 사 건	4 일 본 관 련 사 건	5 민 주 운 동 유 학 생	6 월 북 기 도	7 조 직 사 건	8 남 파 공 작 원	9 개 별 국 보 · 미 화 인	10 계
69								1	11	3	15
70	1			1					1		3
71	1	1		1		1	1	2	4	11	
72				1				3	1		5
73			1								1
74			2	1			6	1			10
75			1	1		1		1			4
76		1									1
77	1	2		1							4
78					4					2	6
79				1						3	4
80	2			1				1			4
81	1		1	3	1		1				7
82	2		2	1	6			2			13
83		1	1	2	7					4	15
84			4	2	3		1			2	14
85	2	1	2	2	7	6	1			5	26
86				2	5	1	1			2	11
87				1	1					1	3
미 확인	1		2		2		2	2	10	19	

(1989년 11월 현재)

(2) 월남자 사건

북한에서 교육받고 남파되어
바로 그날로 자수했다가 30년이
상 지나서 5공때 간첩으로 몰림

(3) 남북어부사건

60년대와 70년대초에 잠깐 남
북되었다가 15~20년 후인 5공
때 간첩으로 몰림.

(4) 재일동포사건

보안사에서 김병진이 쓰고 있
듯이 가장 만만한 경우, 5공에
집중.

(5) 일본관련사건

취업·유학·여행 등으로 일본
으로 갔다가 직접, 간접으로 조청
련계 친척이나 인사들을 접촉하
는 것이 빌미가 됨. 간첩조작의
황금어장.

**(6) 민주화운동 관련 해외유학생 간
첩사건**

국내운동권에 관계있는 해외유
학생을 간첩으로 몰음으로써 국
내 운동을 탄압.

(7) 개별국가보안법 사건

위의 어느 유형에도 들어가지
않은 단독 사건으로 상당수가 조
작혐의 농후함.

동의대 5·3 사건의 재조명

개요

1989.5.3. 05:00경 부산시경 소속 5개 기동중대 800여 명의 경찰병력이, 100여 명의 동의대학생들이 전경 5명을 붙잡은 채 농성중이던 위 대학교 중앙도서관 건물에 진입하여 진압작전을 하던 중, 위 건물 7층 세미나실 복도에서 폭발적인 화재가 일어나 그곳에 진입하여 있던 경찰관 7명이 소사 또는 추락사하고, 경찰관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는 학생운동사상 최악의 인명피해를 냉은 데다가, 진압작전중이던 경찰관 다수가 화염병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화재로 인하여 사상하는 결과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도 전에 위 화재는 학생들이 경찰관들을 사상케 하여 고의적으로 일으킨 양 제도언론을 통하여 홍보되었고, 국민들은 학생운동의 폭

력성, 과격성, 무모함, 부도덕성을 비난하였다.

학생들은 재판을 받기도 전에 여론재판을 통하여 이미 살인마로 매도되었고, 72명의 학생들이 이와 관련하여 구속기소된 결과 무기징역 1명, 징역 20년 1명, 징역 15년 2명, 징역 13년 1명, 징역 12년 1명, 징역 7년 4명, 징역 5년 4명 등 30명이 엄청난 중형을 선고받았고, 42명이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30명은 아직 아무도 감형이나 석방처분을 받지 못한 채 전국 각지의 교도소로 흘러져 형을 복역하고 있다.

한편 동의대학교는 장기간 휴교조치를 당하였고, 휴교령해제의 조건으로 3명의 교수를 해임 또는 정직처분하고 1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을 제적하였는데, 교수들은 그 후 해임무효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학교측이 복직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고, 제적된 학생들은 아직 아무도 구제되지 않고 있다.

사건의 배경

87년 6월 민주화항쟁과 그에 이은 하반기의 노동자 대투쟁을 통하여 급격히 고양된 민중민주운동은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양보적인 민주화조치와 여소야대 정국을 타고 88년말까지 꾸준한 상승국면을 맞이한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정권과 기득권계층은 반동적인 국면으로의 전환을 피하게 되는데, 그 초기적 표현이 88.12.28의 노태우 대통령의 '민생치안에 대한 특별지시'이다. 이를 신호탄으로 하여 정부의 강력한 공권력행사가 시작되었다. 풍산금속 안강공장(89.1), 서울지하철공사(89.3.16), 울산 현대중공업(89.3.30) 등 노동쟁의가 진행중인 사업장에 대규모의 경찰력을 투입, 강제진압하고, 여의도 농민집회(89.2.13)를 폭력적으로 강제해산하였다. 근로자들의 임금투쟁열기가 고조되어 가던 89.2경부터는 경제위기설, 총파업위기설 등 위기의식을 조장하면서, 그러한 위기가 노동자들의 과도한 임금인상요구와 노사분규 및 급진세력의 배후조종에 기인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등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이로써 민중민주운동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었으며, 전국적인 농민 및 노동자 조직의 결성 움직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립 움직임, 사무직종노조를 통한 노동운동이념의 화이트칼라계층으로의 확산, 사회과학서적의 대량 출판 등을 통하여 민중민주운동은 탄압국면 속에서도 양과 질의 발전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대중

운동의 전개를 예견케 하였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89.3 문의환목사 방북사건이 생기자 정부는 이를 빌미로 하여 안기부가 주도하고 검찰, 경찰, 노동부, 보안사 등으로 구성된 공안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키고, 그 산하에 12개 지역 공안합수부를 설치함으로써 이른바 '공안정국'이라는 극도의 정치적 긴장 상황을 조성하였다.

이 사건은 이러한 공안정국의 초기에 발생하여, '화염병 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냉는 등 학생운동을 비롯한 민중민주운동에 대한 대대적 탄압의 명분이 되었다. 우리는 이 사건이 학생운동이 활발한 유명대학에서 발생하지 않고 학생운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지방의 무명대학에서 발생한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사건의 발단에서부터 사후처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과 동의대 학생들은 공안정국 속의 대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칠저하게 이용당하였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과 전개과정

가. 89.5.1 동의대 학생 300여 명은 교내에서 노동절 기념집회를 한 후 그중 100여 명이 정문에서 약 1km 떨어진 곳까지 가두행진을 하였다.

학생들의 노동절 기념시위는 연례적인 것이어서 그날 전국적으로 수십 개 대학에서 시위를 하였고,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동의대의 시위도 타대학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것이었으나, 별일없이 시위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던 학생들 중 10여 명이, 전날 여의도에서 개최예정이던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집회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된 데 대한 항의표시로, 정문에서 약 500m 떨어진 가야3파출소에 화염병 몇 개를 던진 데서 사건이 발단된다.

그해 3.30 현대중공업에 대규모 경찰병력이 투입된 이후 전국적으로 그에 대한 항의차원의 파출소습격이 빈번하였던 터여서 그무렵 학생들의 파출소에 대한 화염병공격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위 파출소 역시 그해 3.30과 4.20에도 위 대학생들로부터 공격받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출입문과 창문에 보호철망이 설치되어있는 등 화염병공격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날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지자 파출소장 경위 김장호는 두 번에 걸쳐서 학교정문부근까지 500m 가량 학생들을 추격하면서 카빈총실탄 24발을 발사하였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는 일단 학생들을 겨냥하는 듯한 자세를 취한 후 허공

을 향해 발사하였고, 마지막에는 정문부근에서 학생들과 대치한 가운데 탄창을 갈아끼우고는 "야 이 새끼들아, 죽고 싶으면 내려와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여러 발을 연속사격하기도 하였다.

위 파출소는 주택가 골목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총이 발사된 곳도 주택과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골목이었다. 그러한 곳에서 그는 공중을 향하여 쏘았다고 주장했으나, 주위에 높은 건물이 많아 자칫하면 유탄에 의하여 인명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 실제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골목옆 점포의 출입문 아래 계단에서 총알이 날아와 부딪힌 탄흔이 발견되어 아찔한 상황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주민들도 한동안 공포와 혼란 속에 빠졌고 대피소동을 빚기도 하였다.

경찰의 시위대에 대한 발포는 4·19이후 처음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에 항의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나. 그날 밤 도서관에서 철야항의농성을 한 학생들은 이튿날인 89.5.2에도 교내에서 총기난사규탄대회를 한 후 이어서 200여 명의 학생들이 대학로로 진출, 항의시위를 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이날 전례없이 시위대의 대량 검거를 위하여 학생으로 위장한 사복 전경체포조 100여 명을 시위대열 속에 투입하였다. 이날 시위대 속에 섞여 있다가 학생들에게 붙잡혔던 전경 5명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이날 시위대열 속에 투입된 사복 체포조는 관할경찰서인 부산진경찰서 소속이 아니라 그때까지 위 대학 시위에 한번도 동원된 적이 없었던 부산시경 기동 80중대였다. 이들은 평소 대학생복장에 머리를 대학생처럼 길게 기르고 대학생과 같은 동작으로 구호와 노래를 하는 등 시위대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가 최루탄 발사 등으로 시위대가 훑어질 때 시위대를 체포하도록 훈련받았다고 한다.

100여 명의 사복체포조가 시위대열 속에 끼어들자 학생들은 평소와 다른 수상한 분위기를 느꼈으며, 드디어는 낯선 사람들이 한결같이 월드컵운동화를 신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가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열 속의 낯선 사람들에게 소속 학과와 학년 등을 물어보아 수상한 사람은 신분확인을 위하여 교내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것이 이른바 전경 5명의 낭치, 감금이다.

다. 학생들이 전경 5명을 붙잡자 경찰은 학생들에게 그날 시위중 연행된 학생 8명과의 교환석방을 제의하였다. 이 제의가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그날 밤 도서관에서 농성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된다.

다음날인 5.3이 총학생회와 단과대학생회 선거일이어서 선거준비로 바빴기 때문에 학생들은 5.2아침 농성해산시 농성을 끌고나온다고 공표하였고, 따라서 그날밤의 농성은 해당초 계획에 없었다. 한편 붙잡은 전경 5명은 전경으로 신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마무리집회때 그 사실을 밝힌 다음 석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무리집회 도중에 경찰이 연행학생과의 교환석방을 제의해 오자, 학생들은 논의 끝에 그날 연행된 8명외에 전날 파출소 공격시 연행되었던 학생 1명까지 포함한 9명과의 교환석방을 역제의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협상의 귀추를 지켜보기 위하여 100여 명의 학생들이 다시 농성을 하게 된 것이다. 당시 전날 연행되었던 학생은 이미 구속영장청구중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임의로 석방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나, 학생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경찰이 8명의 석방을 제의하는 것으로 보아 더 버티면 그 학생까지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라. 그리하여 학생들은 전경 5명을 붙잡은 채 도서관에서 농성을 하면서 경찰과 협상하는 한편, 경찰이 위 1명의 석방을 거부하면서 학내진입을 위협하자, 이를 엄포로 분석하면서도 부랴부랴 석유와 신나 등을 구입하여 화염병을 만드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준비를 하였다. 학생들이 사전에 농성계획이 없었음을 석유와 신나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농성중에 비로소 구입한 사실로도 확인된다.

그러던 중 위 1명의 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그날 밤 늦게 발급되자 경찰은 23:30경 학생들에게 구속영장사본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학생들도 그의 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총학생회장 등 학생회 간부들로 구성된 지휘부는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끝에 위 1명의 석방을 고집하지 않고 전경 5명을 무조건 풀어주되, 마무리집회시 9명과의 교환석방이 결의된 만큼 지휘부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고 5.3에 학생들이 등교한 후 그러한 사정을 알린 다음 석방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총학생회장이 02:00경 그 사실을 부산진경찰서 정보과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학교당국에도 알려주었다.

그후 경찰측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혹시 있을지도 모를 경찰진입을 취재하기 위하여 와있던 기자들도 경찰진입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철수하였고, 학생들도 같은 판단 아래 화염병제작을 중단한 채 03:00경부터 대부분이 잠에 빠져들었다. 04:30경 학교측의 총장, 학생회장, 학생과장 등 3명이 농성장에 와서 자고 있던 총학생회장을 깨워 빨리 전경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찰이 진입할지도 모른다고 말하였으나, 총학생회장이 이미 알려준대로 날이 밝은 후 조건없이 풀어줄테니 염려말라고 대답하

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한 다음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였을 뿐 잠시후 경찰이 진입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돌아갔기 때문에, 총학생회장은 위급한 상황임을 짐작하지 못한채 그동안 여러번 되풀이되었던 이야기의 반복으로 범상하게 받아들여고는 다시 잠을 잤다.

한편, 학생들에게 잡혀 있던 전경들도 처음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거친 대우를 받기도 하였으나, 신분이 확인된 후에는 아무런 신변상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있었고, 학생들이 제공하는 식사를 한 후 학생들이 깔아준 스티로폼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와같은 전경들의 상태는 농성장을 수차 방문하였던 학교당국과 농성장에서 철수한 후 경찰을 방문하였던 기자들에 의하여 경찰에게도 알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부산시경은 전경들이 학생들로 양심선언을 강요받고 있고, 밤을 넘길 경우 다른 기동대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므로 날이 새기 전에 구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부산진경찰서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잠들어 있던 05:00에 5개 기동중대 800여 명의 경찰병력을 전격적으로 교내로 투입하여 진압작전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교내로 투입된 경찰병력은 도서관 출입문을 깨고 난입하여 위로 밀고 올라갔고, 반대로 학생들은 밀려서 결국 옥상으로 쫓겨 올라갔다. 그 과정에서 7층 세미나실 복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화재가 일어나 그곳을 수색중이던 다수의 경찰관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것이다.

사건의 문제점과 인권침해

가. 총기발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야3파출소장의 카빈총 실탄발사는 총을 쏘아야 할 절박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더구나 그의 실탄발사는 단순히 시위대에게 겁을 주어 파출소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하려는 방어적 차원이 아니었고, 도망가는 학생들을 수백 미터씩 뒤쫓는 공격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위 총기발사가 결국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위 총기발사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요건에 합당한 것인지 여부는 끝내 규명되지 않았다. 위 과출소장에게 아무런 책임이 추궁된 바 없음도 물론이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일개 과출소장이 함부로 그와같은 총기사용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의 총기난사는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의 어떤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의문은 다음날의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어진다. 왜 경찰은 학생운동이 타대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해서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의 수도 적고, 시위양상도 특별할 것이 없는 위 대학의 시위에 시경 소속 사복체포조 100여 명을 투입하여 시위대열 속에 섞이게 하였으며, 수상하게 여긴 학생들에게 그중 5명이 불법하게 하였을까? 가만히 두었으면 전경들을 그냥 풀어주었을 학생들에게 연행학생과의 교환석방을 제의하여 결과적으로 농성을 유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마치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상황을 과국으로 몰고간 느낌이 드는 것이다.

나. 무모한 과잉진압.

(1) 대학교내의 경찰투입은 대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보다 큰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최소한 도로 행하여져야 한다. 또한 경찰의 교내 투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학교장에게 맡겨야 하며, 학교장이 자체해결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경찰력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경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대학의 자유를 숭상하는 민주국가에서의 기본원칙이다. 6공화국 정부도 출범시 이러한 원칙을 지킬 것임을 천명한 바 있었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과연 이 사건에서 경찰이 교내에 투입될 필요가 있었던 것인지 대답이 자명해진다. 농성학생들은 전경들을 풀어주기로 이미 결정하였고, 단지 그 시간을 몇 시간 늦추었을 뿐이다. 전경들의 석방이 몇 시간 늦어진다고 해서 그 동안 그들의 신변에 무슨 이상이 생길 징兆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학교 당국도 경찰의 투입을 요청한 바 없었으며, 설사 학생들의 등교 이전에 반드시 전경들을 석방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교당국이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얼마든지 남아 있었다. 한마디로 심야에 대규모 경찰병력이 교내로 투입되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아니었다.

경찰의 교내투입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용인한다 하더라도 그 투입의 목적은 전경의 구출에 있는 것이지 학생들을 짓밟는 데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내로

투입된 경찰은 일단 도서관을 포위한 가운데 학생들과 협상을 하거나 설득하는 등의 과정을 밟았어야 했고, 그래도 학생들이 불응할 경우에 비로소 건물 속으로 진입해야 한다.

당시 농성학생들은 경찰의 진입 위협을 엄포로 생각하고 있었고, 몇 시간 후의 전경석방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경찰의 진입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또한 경찰이 진입하자 학생회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빠져나갈 곳이나 숨을 곳을 찾아 허둥거린 사실로도 확인되듯이 그들에게 경찰에 대한 결연한 저항의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날 선거에서 후임 회장단이 선출되는 대로 임기가 끝나는 학생회 간부들에게 구속을 각오하고 싸울 뜻이 있을 리 없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몇 시간 후의 전경석방을 이미 약속한 터인데 그 몇 시간을 고수하고자 그렇게 싸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구속된 학생들은 만약 그때 경찰이 건물을 포위한 가운데 전경의 즉각석방을 요구하였다 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한결같이 술회하면서 안타까워하였다.

따라서 만약 경찰이 건물을 포위한 가운데 학생들을 설득하였더라면 학생들은 전경을 풀어주었을 것이 틀림없고, 위험한 건물내 진입작전도 필요없었을 것이다. 화재도 없었을 것이며, 참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이 학생들을 설득하는 등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무조건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참사를 자초한 것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탄식을 금할 수 없는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경찰의 진압작전은 급박한 필요도 없었거니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다. 따라서 경찰력의 남용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2) 다수의 시위대가 화염병 등을 휴대한 가운데 농성하고 있는 고층건물에서 진압작전을 할 경우 화재와 추락, 투신 등의 위험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래서 그러한 작전시에는 진화장비가 충분히 동원되어야 하며 건물주변에 안전메트레스와 안전그물을 사전에 빈틈없이 설치하여 추락이나 투신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진압경찰도 건물내부에서 언제 어떤 불의의 사태를 맞이할지 모르므로 자신의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장비를 충분히 휴대하여야 하며, 건물의 구조와 내부사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이상은 경찰 자체의 ‘다중범죄진압요령’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다. 과거 경찰은 건국대 사건때에는 이러한 안전수칙에 따라 여러 대의 고가소방차 등 충분한

진화장비를 동원하고, 건물내로 진입하기 전에 엄청난 량의 메트레스와 그물을 건물 주변에 설치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예방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9층의 고층건물인 데다 야간이었으므로 위와같은 안전수칙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변에 메트레스와 그물이 설치되지 않았다.

사망자 7명 중 4명은 사인이 추락사였는데, 이들은 바닥에 메트레스와 그물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 당시 그들과 함께 창틀에 매달렸던 학생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복도의 화재를 피하여 7층 창틀에 매달려서 힘이 빠질 때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상을 항하여 구조를 요청하며 소리쳤으나 아무도 메트레스와 그물을 가져오지 않아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1명씩 떨어져갔으며, 마지막 사람은 경찰이 그물을 가져와 받쳤으나 아직 메트레스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물 위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심하게 부딪혀 사망하고 말았다. 반면에 위 학생은 메트레스까지 도착하여 메트레스와 그물이 함께 설치된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목숨을 구하고 법정에 나와 자신이 본 바를 증언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생존경찰관들의 증언에 의하면 도서관건물 안에 진입한 경찰들은 7층에 학생 지휘부와 전경이 있다는 사실만 지휘관에게서 고지받았을 뿐 건물내부 구조와 사정에 대하여는 전혀 고지받지 못한 채 투입되었고, 선두조가 앞다투어 올라가느라 그들이 7층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소화조가 미처 따라오지 못하여 바닥에 화염병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서도 아무도 그 불을 끄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7층 세미나실 복도 바닥에 화염병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으면 당연히 그 불을 소화한 후 안으로 들어가야 함에도 학생들의 체포를 서두른 나머지 불을 방치한 채 안으로 뛰어들어 수색에만 열중하였다. 그리하여 평범한 화염병불이 수분 동안 방치된 결과 대형화재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에서 하였던 경찰의 진압작전은 극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무시한 것이었다. 그 결과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화재를 막지 못하였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과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소홀히 한 경찰의 무모한 진압작전이 그 근본원인이었음에도 지금까지 그에 대한 규명이나 책임추궁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었다.

다. 화인

(1) 화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화재발생상황부터 알아보자.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 학생들이 바닥에 엄청난 량의 석유와 신나를 질퍽거릴 정도로 뿌려놓은 다음 경찰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이 들어오자 그곳에 화염병을 던져 순식간에 폭발적인 화재가 일면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마치 피할 새도 없이 소사 또는 질식사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언론도 이에 맞추어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학생 1명이 화염병 1개를 복도에 던지고 도망간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경찰관들이 그곳에 들어서기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경찰관들은 그 화염병불을 보고서도 조금도 위험하지 않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 불을 방치한 채 20여 명이 그곳에 들어가서 수색작전을 하였다. 그리하여 학생은 아무도 없는 가운데 20여 명의 경찰들만이 그곳에서 수색을 하고 있던 중 수분 후에 갑자기 큰 불이 일어났다.

생존경찰관들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들이 그 불을 보고서도 끄지 않고 무시하였던 것은 보통 화염병불과 같이 내버려두어도 저절로 점점 꺼져갔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그 화염병불은 처음에는 원형으로 무릎높이까지 타올랐으나 점점 꺼져가서 주먹만한 불 2~3개가 스멀거리게 되었고 이어서 완전히 꺼진 듯이 보였는데 그 순간 시커먼 연기가 실내에 가득하면서 불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엄청난 열기가 전신에 닥쳤다는 것이다.

이어서 사건의 초기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화인이 어떻게 바뀌어갔는지 살펴보자.

경찰의 주장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달리 검찰은 한 학생이 복도중앙에 놓인 화염병 상자 주위에 석유 1말을 붓고, 제2의 학생이 그 위에 다시 프라스틱통에 들어 있는 신나와 석유를 뿌리고, 제3의 학생이 화염병상자 부근에 화염병을 던져서 그 화염병에서 번진 불길이 화염병상자와 실내에 기화된 신나가스에 급격히 인화·확산되었다고 기소하였다.

1심판결은 검찰의 기소내용과 또 달리, 한 학생이 화염병상자 부근에 석유를 뿌리고 제2의 학생이 그 부근 바닥에 화염병을 던졌는데, 그 화염병불을 본 경찰관 1명이 대형분말소화기를 분사하여 그 불을 끄려 하였으나 이미 소화기의 소화액이 거의 다 소진되었던 관계로 그 불길이 완전히 소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미처 소화되지 못한 나머지 불길이 소화기의 분사압력으로 인하여 석유가 소화기의 분사압력으로 인하여 석유가 뿌려진 바닥을 타고 앞쪽으로 밀려나가 근처바닥에 고여 있던 석유와 화염병상자 주위에 있던 천조각 등에 옮겨붙어 커지면서 열기가 상승하는 바람에 그 옆에 있던

화염병상자 속의 화염병 안에 들어있던 석유, 신나등 인화물질과 그 전날부터 화염병 제조과정에서 기화되어 거의 밀폐되다시피 되어 있던 복도공간에 퍼져 있던 신나가스와 석유가스 등이 그 열기에 인화, 폭발하였다고 관시하였다.

1심판결에서 검찰의 기소내용 중 제2의 학생이 뿌려진 석유 위에 다시 신나와 석유를 뿐였다는 부분이 삭제된 것은 당시 학생들에게 신나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재판과정동안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1심판결이 소화기의 분사압력을 끌어댄 것은 적어도 화염병이 던져진 곳의 바닥에는 석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동시에 그 화염병불이 점점 꺼져갔다는 사실이 생존경찰들의 일치된 증언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화염병불과 석유 등 인화물질을 연결시킬 논리마련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심판결은 1심판결과 또 달리, 한 학생이 화염병상자 주위에 석유를 뿐리고 제2의 학생이 그곳을 향하여 화염병을 던졌으나 정확히 떨어지지 아니하여 화염병의 주불길은 석유가 뿐려진 곳 부근에서 타기 시작하고, 2~3개의 작은 불꽃과 화염병 심지에 붙은 불꽃은 석유가 미리 뿐려진 곳으로 튀어가서 서서히 작아지면서 타들어 가고 있었는데, 뒤따라 들어온 경찰관들이 불꽃이 갑자기 번져가는 상태도 아니고 또 바닥에 석유가 미리 살포되어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여 자연 소화될 것으로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방지하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작은 불꽃더미와 화염병심지의 불꽃에 의해 예열조건을 갖춘 석유표면 위에 다량의 유증기가 발생하고 여기에 불이 옮겨붙어 급속발열(폭발이 아님)에 의한 대형화재가 일어났다고 관시하였다.

2심판결에서 소화기의 분사압력이 삭제되는 대신 예열과 유증기가 동원된 것은 2심 재판과정에서 소화기에 대한 검증결과 당시 경찰이 사용하였던 소화기에 분사압력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꺼져가던 화염병불과 석유를 연결 시킬 길이 없어지자 그대신 예열에 의한 유증기를 끌어낸 것이다.

한편 검찰은 구속기소된 학생 중 18명을 화재발생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여 현존건조물방화지사상죄를 적용하였고, 1심판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2심판결에서는 그 중 11명이 위 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고 7명만이 위 죄의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상의 사실로써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각 단계마다 판단한 화인이 대단히 주관적이고 불명확하며, 그러면서도 학생들에게 화재의 책임을 귀속시키려 하는 점에서만큼은 맹목적이라는 사실이다. 만약 화인이 명백하다면 화인에 대한 각 단계의 판단이 위와

같이 차이날 리 없다. 따라서 화인에 대한 각 단계의 판단이 위와같이 크게 다르다는 것은 화인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는 곧 화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규명이 미흡하였음을 의미한다. 결국 학생들은 화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서 무조건 화재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고 엄청난 중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1심판결에 의하면 소화액이 없는 소화기를 분사하여 불을 끄기는 커녕 오히려 불길을 인화물질 쪽으로 밀어버린 진압경찰의 과실이, 2심판결에 의하면 불길을 보고서도 상황판단을 잘못하여 오랫동안 방치한 진압경찰들의 과실이 각 화재의 주원인이라는 결과가 된다. 진압경찰들이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불길을 제대로 끄기만 하였더라면 대형화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과 2심판결은 모두 결론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버렸다.

(2) 2심판결은 비록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도저히 수긍될 수 없는 많은 문제점과 모순이 있다. 지면관계로 몇 가지만 살펴본다.

첫째, 2심판결은 학생이 던진 화염병이 석유가 있는 곳 바깥에 떨어져 부근에서 주불길이 솟았으나, 2~3개의 작은 불꽃과 심지의 불꽃은 튀어서 석유표면 위에서 불이 붙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생존경찰들의 일치된 증언은 화염병의 불길이 점점 작아져서 스멀거리는 2~3개의 작은 불꽃이 되었다는 것이었지 주불길과 별도로 2~3개의 작은 불꽃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만약 2~3개의 작은 불꽃과 심지의 불꽃이 석유의 표면에서 타고 있었다면 위 판결이 실시한 바와 같이 서서히 작아졌을 수가 없다. 석유표면에 불꽃이 놓일 경우 주변에서 끊임없이 유증기가 공급되면서 불길이 점점 커지고 거세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 번 실험을 하여 본 결과이다. 따라서 위 판결이 석유표면 위의 불꽃이 서서히 작아졌다고 한 것과 그 불꽃에 의하여 석유가 예열되어 유증기가 발생하였다고 한 것은 서로 모순이다.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은 위 불꽃들이 바닥의 석유 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압경찰들이 바닥에 석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실험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같이가 잘된 고급인조석 바닥표면에 깔린 석유 위에 불꽃이 있을 경우 바닥의 석유가 거울역할을 하므로 선박의 등불이 밤바다에 비치듯이 불꽃이 바닥에 비치면서 반사될 뿐 아니라 불꽃 주변의 석유가 지글지글 끓으면서 검은 연

기를 내뿜고 불길이 거세어지기 때문에, 그곳을 수색하면서 바닥의 물체를 들어내기도 하였던 20여 명의 진입경찰들이 석유의 존재를 모를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위 판결은 예열이란 논리를 끌어대기 위하여 증거에 반하고 모순되는 무리한 사실인정을 한 것이다.

둘째, 위 판결은 석유표면에서 발생한 유증기에 의한 급속발염을 기본적인 화인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험에 근거하지 아니한 독단적인 추론에 불과하다. 석유표면의 유증기에 의한 급속발염은 밀폐된 공간 속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와 높은 온도가 주어졌을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당시는 5월초의 새벽으로 냉랭한 기온상태였고, 전혀 밀폐된 곳이 아니었으며, 바닥에 부어졌다는 석유량이 1말로써 공간의 전체 체적에 비하면 미미한 양이다. 따라서 실험에 의하면 이러한 상태에서는 불꽃이 석유표면 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꽃 주변에서 계속 발생하는 유증기에 불이 인화되어, 불길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거세어질 뿐 급속발염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위 판결은 현장의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한 모형실험 등 과학적인 검증없이 급속발염의 외형을 떠는 화재의 양상에다가 화인을 무리하게 맞추어 나간것이다.

셋째, 위 판결은 적어도 두 학생이 불을 지르기로 공모하여 한 학생은 화염병상자 부근에 석유 1말을 붓고, 다른 학생은 그 위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질렀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전제해두고, 그것을 기초로 모든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두 학생의 공모, 석유 1말의 살포, 석유를 향한 화염병의 투척 등은 모두 증거없는 사실인정이다.

우선 경찰의 진입시 바닥에 석유가 깔려 있었다면 걸어다닐 때 미끌거릴 뿐 아니라 바닥의 석유가 거울역할을 하여 방안의 모든 불빛을(당시 천정에 전등도 켜져 있었다) 반사하므로 진입경찰들이 그 사실을 모를 수 없다. 그런데 그곳에 진입한 20여 명의 경찰들은 아무도 바닥의 석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바닥에 있는 화염병불을 위험하게 느끼지도 않았다. 따라서 만약 바닥에 1말의 석유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므로 적어도 경찰들이 진입할 당시에는 바닥에 석유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적이고 상식적이다.

한편 만약 위와 같은 공모가 있었다면 화염병이 석유가 있는 곳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석유가 없는 영동한 곳에 던져졌을 리가 없다. 위 판결은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던지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추리하였으나 그곳은 물

같이가 매우 잘 된 고급인조대리석 바닥이어서 1말의 석유를 중앙에서 부을 경우 바닥의 거의 전역에 걸쳐 아주 넓은 면적에 퍼지게 되므로 좁은 실내에서 그곳에 화염병을 던지지 못하였을 리가 없으므로 설사 아무렇게나 던졌다 하더라도 화염병이 석유가 있는 곳을 벗어나서 떨어질 가능성이란 극히 희박한 것이다. 따라서 화염병이 석유가 없는 곳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닥에 석유가 아예 없었거나 아니면 화염병이 석유와 무관하게 던져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만약 바닥의 석유 위에 화염병을 던져서 불을 지를 작정이었다면 바닥에 석유가 뿌려진 뒤 곧바로 화염병을 던지고 도망가면 그만이지, 위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경찰이 그곳에 진입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이 진입한 연후에 비로소 화염병을 던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역시 화염병투척이 석유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실제로 화재장소에 제일 먼저 진입하였던 경찰관의 증언에 의하면 밑에서 뒤쫓는 경찰과 위로 도망가는 학생들의 대열이 드디어 조우한 곳이 화재장소였으며, 그때 학생들 대열의 맨후미에 있었던 학생이 미처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경찰이 들이닥치자 황급히 화염병 1개를 던지고 도망간 것이 문제의 화염병이었다. 즉 위 화염병은 우발적으로 사용된 것이었을 뿐 방화의 의도하에 사용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의도적으로 1말의 석유가 뿌려지고 그 위에 화염병이 던져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순식간에 17명을 사상케하는 대형폭발성화재를 일으킬 수 없다.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그 정도의 석유가 뿌려진 위에 화염병이 던져진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불길이 커지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피할 수 있을 정도로 서서히 불길이 커지는 것이지, 대피할 수 없을 정도의 급속발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험에 의하면 그 불길이 화염병상자에 옮겨붙을 경우에도 깨지는 화염병 속에서 흘러나오는 석유와 신나가 가세되면서 불길이 더 높이 치솟을 뿐이지 바닥을 타고 불길이 급속히 번지는 것은 아니므로 화염병상자까지 포함시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재판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경찰과 경찰이 화인 속에 극구 신나를 포함시켰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따라서 설사 학생들이 공모하여 석유를 뿌리고 그 위에 화염병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진짜 화인은 무엇인가? 현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답은 모른다는 것일 것이다. 화인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먼저 과학적인 검증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도 화재의 진행경과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과학적인 검증없는 화인판단은 추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론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면 수긍될 수도 있을 것이다.

18명의 변호인들이 추론한 화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사건 화재가 급속발염에 의한 화재라는 것을 화재의 양상으로 보아 명백하다. 그리고 그러한 급속발염은 화재 당시의 현장조건과 석유 및 신나의 성질로 보아 석유로는 불가능하고, 신나 또는 신나 및 석유의 혼합물이어야 가능하다. 즉 신나 또는 신나 및 석유의 혼합물에 조그만 불씨라도 닿으면 순식간에 전표면에 급속발염하게 된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신나는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신나를 바닥에 뿌린 바 없음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다. 만약에 바닥에 신나가 뿌려져 있었다면 경찰의 진입이전에 급속발염이 일어나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므로 오히려 인명피해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합리적인 화인의 추론은 어디서 신나가 나올 수 있는가를 밝히는 것으로 집중된다. 화재현장바닥에 신나가 뿌려질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학생들은 5.3 새벽까지 7층 세미나실 복도에서 화염병을 만들다가 경찰의 진입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자 빈병 속에 신나와 석유의 혼합액을 담은 채 심지를 미쳐 만들지 아니한 미완성화염병을 다수 남겨 놓은채 화염병제작을 중단하고 잠을 잤으며, 잠을 자고 있는 중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쳤기 때문에 그 미완성화염병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옥상으로 대피하였다. 그리하여 생존경찰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미완성화염병들은 그곳에 진입한 경찰들의 발길에 차여 바닥으로 쓰러졌으며 이에 따라 그 속의 신나와 석유가 바닥으로 넘쳐 흘렀을 것이 명백하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화염병상자 속의 화염병 안에 들어 있는 신나와 석유인데, 그 화염병이 경찰의 진입과정이나 수색중 깨어졌다(진입경찰은 함마와 빠루 등을 휴대하였다) 그 속의 액체가 바닥으로 흘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이와 같이 바닥으로 흐른 신나와 석유는 그 양이 많아질 수록 옆으로 퍼져나갔을 것이며, 그러다가 화염병불의 남아 있는 불씨와 만나 맞닿았다면 순식간의 급속발염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호인들의 견해도 하나의 추론에 지나지 않으나, 다른 어떤 추론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렇게 볼때 학생들의 잘못을 경찰의 갑작스런 진입으로 화재현장의 인화물질을 미처 치우지 못하였다는 것과 한 학생이 방화의 고의나 위험의 인식없이 우발적으

로 화염병 1개를 던졌다 사실 뿐이다.

그리고 화재의 책임은 인화물질이 산재해 있는 곳에서 아무런 주의없이 무모하게 진압작전을 수행한 경찰에 귀속되는 것이다.

라. 인권침해

(1)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학생들이 사회혼란을 노리고 대량의 신나와 석유를 사용하여 일으킨 고의적인 방화살인 사건'으로 규정짓고, 그에 맞추어 화재의 경위와 원인을 왜곡, 발표하였다.

심지어 경찰은 학생들의 폐륜성과 극렬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공식적인 발표외에도, 학생들이 대량의 신나와 석유를 뿌려놓고 경찰관들이 방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관들이 들어서자 불을 지르고 도망가면서 밖에서 문을 잠궈서 경찰관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 하였다, 학생들이 전경의 옷을 벗긴 다음 옷뭉치에 불을 붙여 신나와 석유 위에 던졌다, 경찰관들이 불을 피해 창틀에 매달리자 학생들이 창틀을 불잡은 손을 밟아서 빨리 떨어지게 하였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날조된 기사를 언론에 제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함으로써 참혹한 결과를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학생운동에 대한 비난으로 몰고갔다.

이러한 대대적인 언론조작을 통하여 학생운동은 폭력적이고, 과격하며, 부도덕한 것으로 매도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의대 학생들은 동정의 여지가 없는 살인마집단으로 매도되었다.

결국 동의대 학생들은 법률적인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규명되고 시시비비가 가려지기도 전에 제도언론이 주도한 여론재판에 의하여 인격의 존엄과 명예감정을 무참하게 유린당하였다.

(2) 학생들은 사건의 피해당사자인 경찰의 수사에 맡겨짐으로써 엄청난 증오의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의 발표에 모든 수사를 맞추어나갔다. 그에 어긋나는 학생들의 진술과 항변은 용납되지 않았고 살인마가 거짓말까지 한다고 매도당했다. 심지어 사건당시 학생들에게 신나가 없었다는 사실조사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법정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주장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학생들은 바닥에 신나와 석유를 뿌리거나 다른 학생이 뿌리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자백하도록 끊임없이 강요받았고, 옥상으로 도망갈 때 대열후미에 있었던 학생들은 더욱 집중적인 강요를 받았다. 학생들의 부인은 뻔뻔스런 거짓말로 간주되어 구타와 잠안재우기 등의 고문이 행하여졌고, 수

시로 기합 등의 체벌이 개인별로 또는 단체적으로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한편 학생들은 그들이 옥상으로 도망한 후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화재 경위를 알지 못하였으나 언론의 보도를 보고는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경찰관이 죽거나 부상당하였으며, 사회에 엄청난 누를 끼쳤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엄청난 죄책감과 심리적인 억압 속에 조사를 받았으며, 이러한 이들의 심리를 이용한 정신적인 고문이 수사의 전과정에 걸쳐 자행되었다.

학생들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검찰청사의 검사실에서 조사받지 않고 구치소에 마련된 임시 조사실에서 조사받았다. 이러한 조치는 검사의 조사과정에서도 심리적인 억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한 육체적, 정신적 고문에 의하여 학생들은 심지어 있지도 아니한 신나를 뿐만 아니라 뿌리는 것을 보았다는 허위자백까지 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발표에 맞추어나간 수사태도는 학생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경찰관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많은 진압경찰관들이 건물 곳곳에서 바닥의 신나를 인식한 것으로 조서가 작성되었으나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결과 고무호스에서 흘러나온 물이었음이 확인되었고, 심지어 진압경찰관들은 ‘물기’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조서에 ‘신나’라고 기재되기까지 하였음이 확인되었던 것이다.

(3) 재판결과의 허구성은 회인부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검찰의 기소내용이 인정되지 아니하자, 법원은 ‘소화기분사입력’(1심)과 ‘유증기’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가공의 사실까지 끌어대면서 학생들의 유죄를 유지하기에 급급하였으며, 유례없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심지어 경찰의 진입 당시 건물밖으로 빠져나가 화재와 무관한 것은 물론 도서관 건물 속에 있지도 않았던 학생에게 농성주도의 책임을 물어 징역15년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화재현장을 재현한 모형실험 등 과학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주장은 묵살되었다. 결국 학생들은 자신들이 보지도 못한 화재에 대하여 어째서 책임이 있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제시받지 못한 채, 그들의 농성중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하여 30명의 학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이 있어야 할 강의실 대신 전국 각지의 교도소로 흘어져 형을 복역하고 있으며, 1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아직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부**'90년도 인권관련 구속자 통계****1. '90년도 인권관계 구속자 통계****가. '90년 월별 구속자수**

90.11. 10현재 단위 명

시기별	구속자 수
90. 1	
2	324
3	
4	193
5	305
6	131
7	66
8	92
9	97
10	91
11	57
월별미확인	204
누계	1560名

• 자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제공

• 주: 위 1560명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
협의회에서 가족이나 각 단체, 학
교, 노조, 신문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한 수치이므로 실제 구속자 수

는 이보다 최소한 15~20% 상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한다.

따라서 올해들어 '90년 11월 10일
현재까지의 구속자 수는 최소한
1794명으로 추산된다고 볼 수 있
다.

나. '90년 11월 10일 현재 구속자 수

단위 명

분야별	구속자 수
학생	616
노동자	333
재 야	62
출판인	20
군인·전경	23
농어민	13
교 사	4
노점상	1
기 타	9
장기수	149
총 계	1230명

다. 현재(90.11.10) 구속자 법규별 구분

단위 명

법 규 별	구속자 수
국가보안법	50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173
화염병 치벌에 관한 법률위반	186
공부집행 방해에 관한 법률위반	82
폭 력	192
노동쟁의 조정법	24
업무방해에 관한 법률위반	117
3자개입	22
공·사문서위조	7
기 타	12
미확인	77

주: 중복되는 사람은 양쪽 모두를 계산함.

성명서

사유재산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

- 토지공개념 입법추진에 대한 우리의 견해 -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이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한 정의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풍부히 나누어져야 한다.(사목현장 69항)

그러나 오늘날 토지투기로 인한 땅값의 상승으로 성실히 일하는 많은 국민들이 허탈감을 안고 있는가 하면 이로 인한 불로소득은 과소비와 사치풍조를 조장해서 계층 간의 상대적 불만과 빈곤감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기획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1975년부터 13년간 국민소득은 3.1배, 도매물가는 3.7배 오른데 비해서 주택 가격은 4.7배, 땅값은 무려 8.4배나 올랐다. 올해 들어 상승된 분을 감안하면 이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계속해서 땅값이 상승함에 따라 여유있는 계층은 토지를 부의 축적수단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고 여유자금을 땅사재기에 활용하는 등 토지투기의 양상을 빚고 말았다.

급속한 땅값 상승과 그로 인한 토지투기의 성행은 땅값 오름세를 더욱 부채질하였고, 이에 따라 집값도 올라가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왔다. 집없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이 더욱 요원해지는 가운데 토지소유의 극단적 편중이 초래하는 악폐가 심각한 실정이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5%인 54만여 명의 부유층에서는 전국토의 80%인 사유지 중 65.2%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25%가 전 시유지의 90.8%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우리의 국토는 불과 몇 %밖에 되지 않는 부유층의 수중에 들어가 그들만의 땅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부동산 투기바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구가 5천만 명에 이를 2천년 대에 가서는 80% 이상의 국민이 땅 한평 갖지 못하고, 땅 많이 가진 소수의 부유층만이 엄청난 불로소득을 향유하며 이 나라 온 땅을 좌우지 뒤흔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땅은 어느 특정한 계층의 것도 아니고, 가진 이들만의 것도 아니다. 땅은 그 위에 밭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인식이 앞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 바탕위에 이번 국회에서 공동선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제도 가 꼭 실현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는 사유재산의 사회적 의무의 실현과 사유재산권의 남용 근절을 촉구하고자 한다.

가톨릭 교회는 사유재산제도를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사유재산의 폐지와 모든 재산의 국유화를 부르짖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그러나 교회는 사유재산권이 남용되는 것에도 반대한다. 탐욕이 사유재산권의 남용을 초래하면 이는 공동선에 따라 모든 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는 재산의 본래 목적에도 어긋날 뿐더러 중대한 사회혼란을 자아내는 원인이 된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믿는 이들이 있을 수 있고 이 점을 생각하더라도 사유재산을 지키고 발전케 하는 길은 사유재산권의 남용을 막고 균형을 잡아가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그 효과적인 대응책은 토지공개념제도를 내실있게 확대 도입해서 한시바삐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토지공개념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드러난 일부 정치인들의 공동선 실현의무를 막강한 듯한 자세와, 특히 땅을 많이 가진 것으로 알려진 재벌과 그 재벌들이 경영하는 몇몇 언론사들의 모호한 태도에 신뢰를 보낼 수 없음을 슬퍼한다.

우리는 이제 사유재산권 남용과 이에 따른 과행적 사회현상에 대해 더이상 방관자의 자세를 취할 수 없으며, 사유재산의 사회적 의무가 지켜지도록 하며 사유재산권 남용을 막아야 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 동시에 가진 이와 기득권자들도 사유재산 자체가 본질상 사회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 해서, 특히 새로 만들어 낼 수 없는 재화인 토지의 소유 및 이용, 개발은 공공복리에 맞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재화는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용해야 하고 정의에 입각해서公正하게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해 이를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산과 토지의 소유현실에 눈을 돌려야 하고 그 측면에서 정의를 추구해야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과 나눔의 실천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지닌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현대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하며 정의와 사랑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인류의 행복과 세계평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바이다.

1989. 9. 23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박정일 주교

오늘의 사회현실을 우려하는 우리의 호소

인간이 정의롭고 평화스러운 사회안에서 행복하게 현대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창조주 하느님의 뜻이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사회현실을 보면 사람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갖추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요원한 상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사실 작년 4월 우리가 “현시국을 우려하는 우리의 호소”를 발표한 후 오늘에 이르는 1년을 회고해 볼 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과행과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5공청산이나 악법개폐를 벌리고, 여러가지 정부의 시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현정권의 비도덕성에 일차적 책임이 있고, 당리당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현시국을 우려하며 종교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자성하고,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우리 사회안에 구현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우

리의 견해를 천명하고자 한다.

1. 통일문제

조국의 통일은 우리 거래가 한반도안에서 평화스럽게 살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기본 조건이다.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근본적 장애요인은 남북한 당국자들의 진정한 통일 의지의 결여와 자신들의 기득권 보존을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행복보다 중요시하는 소아적 이기주의의 발동이라고 생각한다.

남북한 당국자들이 그러한 생각과 태도를 고수할 때 남북간의 대화는 통일에 아무 런 유익이 될 수 없다.

조국의 통일문제는 어떤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조국통일은 오로지 민족적 화해와 사랑, 상호이해와 우호적 포용,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필요와 부족을 보충해주는 아량의 정신이 선행될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정신을 토대로 하여 상호우호 관계하에 인적, 물적, 모든 차원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교류 없는 통일논의는 비현실적이며 탁상공론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 정권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조국통일을 가로 막거나 어렵게 하고 있는 국내법의 개폐작업을 해야 한다. 또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다 영어의 몸이 된 인사들에 대한 석방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 분단 45년 만에 열린 남북총리회담을 보면서 미흡한 마음을 떨칠 수 없으나, 앞으로 이러한 기본정신을 살려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원한다.

2. 경제문제

살기 위하여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인간에게 경제만큼 절실한 문제는 없다. 한 사회안에서 경제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평화와 행복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경제문제가 현세생활에 가장 절실한 문제인 만큼 인간의 관심과 이기심을 가장 강하게 발동시키는 것도 경제문제이다.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증명이나 하듯이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는 경제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부정, 불의 등이 자행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의 공동선익을 무시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주의적 생활태도 내지 경제 활동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월 10여만 원의 봉급근로자가 있는 반면, 수천만원의 가

구를 서슴없이 사들이는 계층의 사람들이 공존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병적 경제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사회안에 경제정의가 철저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 적절한 토지공개념과 금융설명제 등을 비롯하여, 농어민과 도시빈민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한 과감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정한 경제질서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과렴치한 경제사범들에 대한 공정하고도 엄격한 사법적 처리 또한 필요불가결한 사항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3. 인권침해, 인간성 침해화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인권이 유린되고 범죄가 횡행하며 인간성이 황폐해지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다.

6공화국에 들어와서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 계속되고 있으며 각종 범죄가 창궐하고 폭력이 난무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생활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또 정상적 방법보다는 각종 탈법과 범법으로 치부, 득세하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많은 우리 사회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도덕성 회복, 불신풍조의 일소, 선량한 인간성 함양 등은 우리가 지금 시급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모든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각성, 그리고 특히 공권력의 정당한 사용과 공무원들의 올바른 업무수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4. 환경, 공해문제

자연계는 조물주 하느님께서 인류공동체가 생을 영위하도록 마련하여 주신 공동유산이다. 우리는 이 공동유산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건전한 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할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전 세계는 물론 오늘날 우리 한국의 자연도 근년에 와서 극도로 오염이 심해져서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자연환경의 보존과 공해추방은 개인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인류공동체가 공동의 노력으로 대처해야 하고, 하느님의 창조의도와 질서에 순응하는 자세로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우리는 극도의 물질주의와 편의주의, 그리고 공동체를 외면하는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의 생활태도를 배격한다.

한국 천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 제19차 정기총회에 모인 우리들은 지난 1년 동안의 우리 사회현실을 돌아켜 보면서 이상과 같은 견해에 뜻을 같이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뜻있는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사회에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구현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생활폐수와 쓰레기,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자동차의 대기오염,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해수욕장과 관광지의 쓰레기오염 등은 예외없이 이러한 생활 태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환경보전 운동을 경건한 신앙심과 진정한 정의·평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꿔 나아갈 것을 기약한다.

1990. 9. 7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박정일 주교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133-180 서울시 성동구 능동85-12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204호
TEL : (02) 461-3897
FAX : (02) 461-3898

226
1991. 3. 17